

#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2004. 12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 서 언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즉, 법인실재설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 제설의 입장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익금불산입방식의 수입배당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법인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의 조정이 미흡하다. 둘째,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아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 셋째,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넷째,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 다섯째,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배당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여섯째,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 배당의 비중립

성 문제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일 출자자인 경우,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개인인 경우, 그리고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동일한 기업을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중과세의 크기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계층이 다른 출자자간의 수직적 공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구하여 이를 비교해 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진수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 숭실대학교의 전규안 교수, 본원의 안종석 박사,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배당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원고정리에 수고한 이은경 주임연구원, 안성윤 연구원과 안상숙 연구조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본 보고서의 교정을 맡아준 출판담당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I. 주요내용

### 가. 배경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자에게 배당이 된 후 그 소득에 대해서 출자자단계에서 또 다시 과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즉, 법인실재설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putation)방식의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조정되지 못하거나 조정 후 조세가 중립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

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해 주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는 1/9 gross-up 비율에 의한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해 배당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일본은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소득금액의 10% 또는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검토대상 국가 모두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중과세 조정방법도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지 않다. 둘째, 검토대상 국가 모두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조정해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수입배당공제법에 의해 배당의 70%, 80%, 1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과 관련된 세액공제액을 합한 소득인 면제투자소득을 소득공제하며, 독일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일본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수입배당금의 8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검토대상 국가는 모두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서 수입배당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검토대상 국가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 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먼저 단일 출자자를 가정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세부담률의 차이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비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개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셋째, 소득세제의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데, 출자자가 출자자단계 또는 법인단계 및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의 실효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 누진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셋째,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 II. 정책시사점

### 가.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현행 배당소득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인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의 조정이 미흡하다. 둘째,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아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

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 셋째,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넷째,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 다섯째,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배당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여섯째,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 배당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 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출자자가 분배받은 배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기업의 출자자는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부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는 그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다는 문제는 사내유보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당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퓨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임퓨테이션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선택으로서 저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 이외에도 고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으로는 현행 임퓨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 대신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을 결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희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은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저소득 출자자의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액을 낮출수록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는 축소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미달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의 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출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를 받지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이 8%임을 감안할 때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율의 최저세율 정도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은 주가의 상승에 의해 주주가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 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17
II. 배당소득과 조세 .....	20
1. 배당소득세의 의의 .....	20
2.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기존의 연구 .....	22
3. 조세와 기업의 배당정책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	26
4. 기존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의 설정 .....	31
I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	34
1. 완전통합(full integration)방법 .....	34
2.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방법 .....	37
IV.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	43
1. 분석대상회사 .....	43
2.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규모 추이 .....	44
3. 배당성향 추이 .....	46
4. 배당률 및 배당수익률 추이 .....	54
5. 주당 배당금의 증감 추이 .....	56
6. 우리나라 기업 배당정책의 평가 .....	57
V.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	59
1.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 .....	59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변천과정 .....	64

3. 현행 세법상의 배당소득과세제도 .....	70
VI.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 .....	78
1. 미국의 배당소득세제 .....	78
2. 영국의 배당소득세제 .....	86
3. 독일의 배당소득세제 .....	93
4. 일본의 배당소득세제 .....	97
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국제비교 .....	106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	109
1. 단일 출자자의 경우 .....	109
2. 다수 출자자(개인 출자자)의 경우 .....	118
3. 다수 출자자(법인 출자자)의 경우 .....	136
VIII.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	154
1.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	154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기본방향 .....	162
3.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	167
IX. 요약 및 결론 .....	177
참고문헌 .....	182

## 표 목 차

<표 IV-1> 분석대상회사 .....	4
<표 IV-2>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추이 .....	4
<표 IV-3> 전체 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	4
<표 IV-4>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	4
<표 IV-5> 2003년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분포 .....	6
<표 IV-6> 제조업의 각 업종별 배당성향 .....	2
<표 IV-7> 배당률 추이 .....	4
<표 IV-8> 배당수익률 추이 .....	5
<표 IV-9> 주당배당금 증감분포 추이 .....	7
<표 V-1>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변천과정 .....	6
<표 V-2>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 변천과정 .....	6
<표 V-3>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비율 .....	7
<표 V-4>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비율 .....	7
<표 VI-1>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인하 내용 .....	6
<표 VI-2>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변화 .....	14
<표 VI-3>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국제비교 .....	18
<표 VII-1> 연도별 법인세율, 소득세율, 배당성향, 배당세액공제율 .....	114
<표 VII-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 차이 .....	16
<표 VII-3> 이중과세 비율 .....	17
<표 VII-4> 법인세율 .....	11
<표 VII-5> 소득세율 .....	11
<표 VII-6> 법인기업 출자자(개인)의 세부담(배당비율 100%) .....	124

<표 VII-7> 개인기업 출자자의 세 부담 .....	13
<표 VII-8> 법인기업 출자자(개인)의 세 부담(배당비율 21%) .....	128
<표 VII-9> 법인기업 출자자(개인)의 이중과세 비율 .....	129
<표 VII-10> 지분비율에 따른 E자값 .....	17
<표 VII-11> 법인기업 출자자(법인)의 세 부담(배당비율 100%) ...	140
<표 VII-12> 법인기업 출자자(법인)의 세 부담(배당비율 21%) .....	144
<표 VII-13> 법인기업 출자자(법인)의 이중과세 비율 .....	145
<표 VIII-1>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비율 .....	17
<표 VIII-2> 주식양도차익 과세 .....	16

## 그림목차

[그림 IV- 1] 업종별 배당성향 추이 .....	51
[그림 IV- 2] 기업규모별 배당성향 추이 .....	53
[그림 VII- 1]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100%) .....	126
[그림 VII- 2]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21%) .....	129
[그림 VII- 3]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소득 10억) .....	131
[그림 VII- 4]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 (소득 10억) .....	131
[그림 VII- 5]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배당비율 21%) .....	133
[그림 VII- 6]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 (배당비율 21%) .....	133
[그림 VII- 7]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및 비율 (법인소득: 10억원, 배당비율: 21%) .....	134
[그림 VII- 8] 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10억, 100%) .....	142
[그림 VII- 9]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100%) .....	142
[그림 VII-10] 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21%) .....	146
[그림 VII-11]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21%) .....	146
[그림 VII-12]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소득 10억) .....	148
[그림 VII-13]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	
(소득 10억) .....	148
[그림 VII-14]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배당비율 21%) .....	150
[그림 VII-15]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	
(배당비율 21%) .....	150
[그림 VII-16] 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및 비율(법인소득: 10억원, 배당비율: 21%) ..	152
[그림 VII-17]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및 비율(법인소득: 10억원, 배당비율: 21%) ..	152

# I. 서 론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획득한 순이익을 기업의 출자자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미래성장을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나누는 결정을 기업의 배당정책(dividend policy)이라고 한다. 배당금은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당장의 현금수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사내유보금은 미래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기자금의 주요한 내부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목적이 단기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의 최대화,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 또는 주주의 부의 극대화라고 할 때, 기업의 배당정책은 결국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과 유보금의 비율을 적절히 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배당정책이 과연 조세로부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사내유보금만큼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배당정책은 Miller와 Modigliani(1961)의 주장대로 기업가치와 무관할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가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의 비중립성이 존재한다면 조세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자에게 배당이 된 후 그 소득에 대해서 출자자단계에서 또 다시 과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즉, 법인실제설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익금불산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 둘째,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때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저소득 출자자의 실효세율이 고소득 출자자의 실효세율에 비해 더 높아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넷째,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배당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다섯째,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 배당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sup>1)</sup>. 이를 위해 먼저 동일한 기업을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중과세의 크기를 분석해 본다. 만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세부담과 같지 않다면 이

1) 본 연구에서는 의제배당에 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의제배당에 관해서는 이준규·김진수(2002)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과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계층이 다른 출자자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구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현행 배당소득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배당소득과 조세에 관한 기존연구와 본 보고서의 연구방향을 설정해 보았고, 제 III 장에서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고, 제 IV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제 V 장에서는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를 살펴 보았고, 제 VI 장에서는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 및 주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제 VII 장에서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을 하였고, 제 VIII 장에서는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IX 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배당소득과 조세

### 1. 배당소득세의 의의

배당(dividend)은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 총회의 결의로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은 이익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된다. 이익배당은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현금배당이 이에 해당한다. 주식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다.

상법은 회사의 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462조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text{배당가능이익} = \text{순자산액} - \text{자본액} - (\text{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 \text{이익준비금}) - \text{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한편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을 배당소득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sup>2)</sup>.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

2) 자세한 내용은 제V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건설이자의 배당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③ 의제배당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등
- ⑦ 기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획득한 순이익을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미래성장을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나누는 결정을 기업의 배당정책(dividend policy)이라고 한다. 배당금은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당장의 현금수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유보이익은 미래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기자금의 주요한 내부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 즉 주가는 배당과 미래성장률의 함수로 표시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이 클수록 기업의 가치가 커지며,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가 높아진다. 그러나 배당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투자자를 위한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어 미래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기업의 가치에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배당정책은 배당과 사내유보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배당정책은 그 기업이 배당을 증가시키면 결국 계획된 투자안의 실현을 위한 자금의 원천을 외부로부터 구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이나 자금조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의 고유한 재무적 의사결정 분야이다.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할 때 당해 배당이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배당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

라고 한다. 배당소득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를 이루는 13개 국세와 17개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이 아니고, 배당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는 엄밀하게는 배당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이며, 배당을 받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인 것이다.

## 2.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기존의 연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주주에게 분배한 배당에 대해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다.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독립과세가 정당한가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이론

#### 1) 배당소득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

배당소득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견해로서의 법인실재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독립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견해로서의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시각이다<sup>3)</sup>.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인 이상 법인의 소득은 주주와는 관계없는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3) 최명근(1998), pp. 48~49.

차감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배당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인 주주의 소득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상이한 두 개의 조세주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인단계에서 한 번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되어 그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전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경제적 관점에 따른 독립과세론은 법인원천에 대한 독립과세를 정당하다고 보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sup>4)</sup>.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특권, 특히 유한 책임의 이익은 법인기업에 부가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둘째, 법인세 세율이 개인소득세 세율보다 낮고 법인의 유보이윤을 개인소득세 과세를 위해 주주 등 개인들에게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과세상의 공평을 위해 법인의 이윤에 부가적인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개인소득에 대해서보다 법인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등으로 세부담을 높게 과세하는 것은 세수를 증가시키는 편리한 방법이다.

## 2)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라는 주장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법인의 본질에 대한 견해로서의 법인의제설과 경제적 관점에 따른 통합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견해로서 법인의제설은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며, 자연인 이외의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법인을 자연인으로 의제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sup>5)</sup>. 법인의 본질은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각각 주주의

4) J.E. Meade(1987), p. 227.

5) 최명근(1998), p. 47.

귀속이익이 되며,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단계에서 선납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조세채무자인 것은 분명하나, 경제적으로는 조세의 진정한 부담자는 주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이 주주에게 분배된 때에 그 배당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통합에 따른 통합과세론은 독립과세론을 비판하면서 이중과세의 조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통합과세론의 기본이 되는 이론은 법인의 도관이론(conduit theory)이다.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모든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만일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6)</sup>. 첫째, 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기업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비효율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함으로써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의 상대적 조세부담이 커지면 법인기업에 의한 투자의 자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조달결정의 왜곡은 법인기업이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는 자기자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중과세되지만 타인자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세제하에서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이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보다 높게 되기 때문이다.

6) Carter(1967), pp. 19~25, 이준규·이은상(1996), pp. 626~628.

## 나.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의 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의 조정에 관한 연구로는 McLure(1987)가 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합과세방법(partnership method)이 당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는 이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시행하기에 행정적으로는 매우 힘든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주가 과세연도중 일정한 기간 동안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때 기업의 소득을 주주들에게 나누고 과세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주가 법인일 경우 이윤증에서 자기 몫만큼의 이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탈세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소득 이외에 자산매각소득도 주주에게 분배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의 조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장재식(1976)에 의해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최근까지도 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병과는 법인이 그 소득의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에 오히려 총합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되는 과소과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이 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배당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이중과세의 현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각 주주의 소득의 규모에 따라 이중과세의 비율이 달라서 법인소득세의 부담에 역진적인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먼저 주주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전의 소득에 의하여 지상배당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다음으로 법인에 대하여 낮은 세율의 독립적인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명근(1991)은 이중과세구조로 인해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다른 개인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인 배당세액공제제도가 공제율이 낮아서 실효적이

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당시의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분통합방법으로서 1/2 gross-up한 금액만을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반액 gross-up 임퓨테이션방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준규(1993)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배당성향을 기초로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본 결과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이 더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조세측면에서 이중과세 때문에 법인기업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세규모의 사업이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배당성향을 기초로 할 때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개인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이중과세의 조정장치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인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규·이은상(1996)은 이준규(1993)의 연구를 발전시켜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법인소득 중 배당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기초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보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조세와 기업의 배당정책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

조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직접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배당정책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밝히려는 연구<sup>7)</sup> 중에는 조세를 고려한 연구도 다

7) 배당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배당정책이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냐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업이 배당과 유보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가

수 있는데,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조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가. 조세와 배당정책이 무관하다는 이론

조세가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은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이론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이론은 Miller and Modigliani(1961)<sup>8)</sup>에 의

---

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론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배당은 기업의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Walter(1956), Gordon(1959) 등의 연구가 있다.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불확실성의 크기는 소득이 실현될 미래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보통주의 수익률은 기간의 증가에 따라 역시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주들은 미래의 배당 및 자본이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보이익보다는 당기배당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배당은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으로서 Miller and Modigliani(196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수익력이기 때문에 주가는 주당이익의 크기에 따라 변동하고 그 기업의 이익을 배당과 사내유보로 나누는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배당이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으로서 Farrar and Selwyn(1967), Brennan(1970) 등의 연구가 있다.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서로 다르며, 지급이자는 법인과 개인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개인소득세의 누진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배당에 대한 세율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다면, 투자자는 그의 수입을 배당보다는 자본이득을 통하여 얻는 것이 유리하고 기업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8) Miller and Modigliani의 처음 연구에서는 세금이나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perfect market)을 가정하였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하에서 Miller and Modigliani는 일정한 배당의 수량에 의한 부의 증가는 동일한 정도의 주가하락에 의하여 상쇄되고, 또한 배당의 포기인한 유보이익의 증가는 포기한 배당액 크기만큼의 주가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주의 부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

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Miller and Scholes(1978, 1982)는 세금을 고려함으로써 Miller and Modigliani가 주장한 배당정책 무관론을 발전시켰다<sup>9)</sup>. 이들에 의하면 비록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하여 차별적인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배당소득에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된 투자전략, 즉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 중에서 투자자가 공제받기를 원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무위험이자율로 차입하고 그 자금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무위험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관관계가 매우 큰 두 주식으로 매입과 대주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세금지급을 투자자의 사후까지 연기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세금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무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세가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은 배당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 이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배당의 고객효과 이론은 배당정책 무관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Miller and Modigliani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sup>10)</sup>. 배당의 고객효과란 배당소득세가 자본소득세보다 높은 세율구조하에서는 소득이 높아서 세율구조가 높은 투자자 집단은 자본차익을 더 선호하여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지만, 세율구조가 낮은 투자자 집단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각각 독립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배당정

---

의 현재가치는 현재의 배당결정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주가 받는 배당은 주식의 기말가치(terminal value)의 하락에 의하여 정확히 상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미래의 순이익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기업의 가치는 현재와 미래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로지 그 기업의 미래 기대이익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 M. Miller and M. Scholes(1978), (1982).

10) M. Miller and F. Modigliani(1961).

책을 변경시키더라도 주주의 구성분포만 달라질 뿐, 기업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객효과는 일단 기업이 특정한 배당성향을 설정하면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론으로서 기업이 안정된 배당정책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설명해줄 수 있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가장 적절한 배당정책이 수립되면, 이러한 배당정책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이 정책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매매에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첫째, 중개수수료, 둘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자본이득세, 셋째, 기업이 새로이 확립한 배당정책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iller and Modigliani가 처음으로 제시한 고객효과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져 왔다<sup>11)</sup>. 이 중에서도 특히 Black and Scholes(1974)는 회귀분석을 통해 여타조건이 동일하고 배당성향만이 다른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고배당 주식의 주가는 저배당 내지 무배당 주식의 주가보다 결코 높게 평가되지 않고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Miller and Modigliani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sup>12)</sup>.

11) Elton and Gruber(1970)는 배당락이 행해졌을 경우 평균주가조정액을 관찰함으로써 고객효과를 관찰한 결과 평균주가조정비율과 한계개인소득세율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배당지급액이 증가할 때마다 암시적 세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초로 고객효과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12) 또한 Black and Scholes는 많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고객효과를 인식하여 시장에 있는 모든 고객들의 배당에 대한 다양한 선호가 각 기업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배당정책에 의하여 충족되어 있다면, 특정기업이 어떤 특정 배당정책을 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 투자자에 의하여 특별히 선호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환언하면, 세금이나 거래비용 등 시장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배당정책은 특별히 그 주가 또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투자자들은 각각의 선호에 맞는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의 주식을 소

## 나. 조세와 배당정책이 유관하다는 이론

Miller and Modigliani의 배당정책 무관론에 대한 반론 중의 하나는 배당정책의 조세효과(tax effect)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투자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차감한 후의 가치분소득이며, 따라서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주가상승으로 실현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중 어느 것이 높으나에 따라 배당정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소득세율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제하에서는 투자자들은 유보이익에 의한 자본이익의 실현을 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과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 세금공제 후 같은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기만 한다면 어떤 특정한 주식에 투자하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공제 후의 수익이 동일해 지려면 고배당의 주식은 저배당 주식 즉, 높은 자본소득을 실현하는 주식보다 세전수익이 더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배당수익에 자본소득을 합한 금액과 동일한 총수익을 보장해주는 두 주식을 비교할 때 총수익 중에서 배당수익의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이 큰 주식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더 높은 세전 기대수익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주식가격은 보다 낮아진다. 이것은 곧 배당의 지급이 많아질수록 주가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은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의 차이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Farrar and Selwyn(1967)의 연구<sup>13)</sup>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서로 다르며, 지급이자는 법인과 개인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

---

유함으로써 어느 한 기업도 배당정책의 변경에 의해 기업가치의 증대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F. Black and M. Scholes(1974).

13) D. Farrar and L. Selwyn(1967), pp. 444~454.

외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개인소득세의 누진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배당에 대한 세율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다면, 투자자는 그의 수입을 배당보다는 자본이득을 통하여 얻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기업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Brennan(1970)은 일정한 위험도하에서 기대배당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주식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자본이득보다 배당금에 대하여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차감 후의 수익률이 최소한 같아지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일수록 그 세전수익률은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따라서 배당이 많은 주식일수록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할 경우에는 배당 대신에 주식 재매입의 형태로 이익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4. 기존의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연구방향의 설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법인의제설은 법인의 본질이 주주의 집합체라고 보는 것인 반면,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그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는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당연히 이중과세인 반면,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전혀 이중과세가 아니다. 법인의 본질을 정의하기에 따라 이중과세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학적인 법인본질론에 의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의미

14) M. Brennan(1970), pp. 417~427.

가 있을 것이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사내유보금만큼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배당정책은 Miller and Modigliani(1961)의 주장대로 기업가치와 무관할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가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Miller and Scholes(1978)는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하여 차별적인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배당소득이 불리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된 투자전략을 통해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배당정책이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Miller and Scholes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거래를 구축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는 꼭 배당금의 지급이 세제상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세율의 차이를 고려할 때 배당보다는 유보이익을 선호한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법인세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의 부채에 대한 이자는 개인소득세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제설 중 어느 이론이 옳은 것인가 또는 조세가 배당정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로 인해 조세가 비중립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보

고자 한다. 먼저 동일한 기업을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중과세의 크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만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세부담과 같지 않다면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과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를 나누어 소득계층이 다른 출자자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구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중과세의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Ⅲ.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sup>15)</sup>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완전통합 방법과 부분통합방법으로 구분한다. 완전통합방법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주주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소득뿐 아니라 사내유보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부분통합방법은 법인단계 또는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만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 1. 완전통합(full integration)방법

##### 가. 조합과세방식(partnership method)

법인의 구성원인 출자자를 공동사업의 조합원(partnership)으로 보고, 각 출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법인유보이윤을 포함한 법인의 총소득을 귀속·할당시켜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이 방법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full 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15) R. Musgrave and P. Musgrave(1989) pp. 371~377,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 pp. 35~40, 최명근(1998) pp. 50~58, 이준규(2002) pp. 32~3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6) 이와 같은 조합과세방법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사업법인(small corporation)에 대한 과세방법을 들 수 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사업법인에 대하여 조합과세방법과 정규 법인소득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서 Musgrave and Musgrave(1989)는 법인이 근로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처럼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법인은 우선 법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출자자들에게 귀속·할당시키고, 출자자는 귀속·할당된 세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고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조합과세방식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법인단계에서는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만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상이한 소득원천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해소된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배당소득에 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상의 우대조치를 함에 따라 사내유보를 선호하게 되는 현행 세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법인원천소득 중 배당분뿐 아니라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당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방법은 출자자에게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법인의 유보소득이 아주 많고 출자자의 배당금이 아주 적은 경우 출자자는 내부유보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지불하기 위해 소유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므로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이 방법은 소규모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가 계속 바뀌는데, 법인소

---

세 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IRC §1361~§1379).

득을 많은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데에는 엄청난 행정비용 및 신고비용이 따를 것이다. 셋째, 배당이 촉진됨에 따라 민간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동일한 금액의 법인원천소득이 사내유보되면 기업저축으로서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지만, 개인에게 배당되면 그 중 일부는 소비되기 때문이다.

#### 나. 자본이득과세방식(capital gain method)

자본이득과세방식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도 조합과세방식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소득 중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미분배소득인 법인유보에 대해서는 주가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본이득과세방식은 우선 법인소득 중 배당분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단계에서는 배당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유보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단계에서든 한 번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완전통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시기와 관련하여 자본이득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이 과세상 어려움이 있다. 자본이득과세방식에 의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통합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을 그 발생단계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이득을 그 발생단계에서 과세하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주식의 평가가 매우 어렵고, 상장주식의 경우는 주가가 법인의 유보이익만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은 매각단계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자자들은 가능한

주식의 매각을 연기함으로써 누진소득세제하에서 기타의 원천소득보다도 실효세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이득과세방식은 자본이득을 그 발생단계에서 과세해야 이론적으로 완전통합의 방법이 될 것이나 실제로는 자본이득을 매각단계에서 과세하게 될 것이므로 완전통합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매각단계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가 아니라 발생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조합과세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자의 소득세납세에 수반되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불배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커서 출자자의 조세부담은 큰 반면 수취하는 배당액은 작기 때문이다.

## 2. 부분통합(partial integration)방법

### 가. 법인단계 조정방법

#### 1) 지급배당공제방식(dividend-paid-deduction method)

지급배당공제방식은 배당도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이라고 간주하여 법인원천소득 중 배당분은 법인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마치 손금처럼 공제하는 방법이다.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고 배당된 부분은 주주의 개인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제거된다.

지급배당공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해 준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배당 상당액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인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소득계산상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손금처럼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사용이 타인자본의 사용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배당공제방식은 법인이 이 제도를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이 배당을 과도하게 하면 기업의 내부유보를 크게 감소시켜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은 배당금은 기업의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 상법 및 기업회계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7)</sup>. 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는 이익배당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보고 있다. 즉,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이 배당가능이익이다. 이와 같은 상법상의 이익개념은 기업회계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기업회계상의 이익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배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상법과 기업회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2) 지급배당경감방식(split-rate method)

지급배당경감방식은 법인원천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하여는 높은 법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배당분에 대하여는 낮은 법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때 유보분에 적용하는 높은 법인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개인이 적용받고 있는 개인소득세의 실효세율과 같은 수준의 법인소득세율로 책정한다. 이처럼 유보분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이 과도하게 유

17) 이하의 논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 참조.

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배당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급배당경감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 않는다. 법인단계에서 배당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출자자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므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만일 높은 법인세율 세율로 과세된 유보소득이 나중에 실제로 배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이 경우 높은 법인소득세율과 낮은 법인소득세율의 차이에서 생긴 법인소득세 상당액을 주주 또는 법인에게 환급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나. 출자자단계 조정방법

##### 1) 임putation 방식(imputation method)

임putation 방식은 출자자가 수령한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한 후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해 지불한 귀속세액(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산식으로 표현된다.

[출자자의 개인소득세액 산정식]

$$: (\text{배당금} + \text{귀속법인세액} + \text{다른 종합소득})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 \text{귀속법인세액}^{18)}$$

18) 귀속법인세액 = 배당금(원천징수된 세액 포함) × {법인세율/(1-법인세율)}

임putation방식은 법인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이중과세의 조정이 출자자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인세 부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출자자의 배당소득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과중감을 제거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셋째,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소득세가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법인이 예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mputation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인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지만, 유보이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없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둘째,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 셋째, 법인세율보다도 높은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출자자의 경우에는 수입배당 미신고에 의한 조세부담회피의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 2) 수입배당공제방식

(dividend-exclusion or deduction method)

수입배당공제방식은 법인원천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출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공제하거나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출자자의 세액 산정식]

: {(배당금 + 다른 종합소득) - 배당금(전부 또는 일부)} × 개인  
소득세율(또는 법인세율)

이와 같은 수입배당공제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수입배당금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익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정책당국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정함으로써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입배당공제방식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인소득 중에서 배당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 3)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dividend-received-credit method)

법인원천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출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출자자의 세액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출자자의 세액 산정식]

$$\begin{aligned} & : \{(\text{배당금} + \text{다른 종합소득}) \times \text{개인소득세율(또는 법인세율)}\} \\ & \quad - (\text{배당액} \times \text{배당세액공제율}) \end{aligned}$$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출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액은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지 않은 배당액이다. 또한 세액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다

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소득 중 배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그러나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인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있다. 법인소득 중에서 배당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당세액공제율이 출자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출자자가 받는 배당을 신고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그러나 배당세액공제율이 출자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을 때에는 출자자가 수취한 배당을 신고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 IV.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 1. 분석대상회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업수는 2003년 말 현재 27만 1,353개인데,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해 전체 배당금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배당금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sup>19)</sup>.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12월 결산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배당 규모를 파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배당현황을 분석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sup>20)21)</sup>.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에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연도별 현황은 <표 IV-1>과 같다. 1994년의 경우 총 372개 조사대상기업들 중에서 85.2%인 317개사가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492개 조사대상기업 중 288개 기업만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10년 동안의 최저치인 58.5%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다시 증가하여

---

19)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 등록법인, 외감법인이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조회하도록 하는 전자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1) 결산일이 대부분 3월말이거나 6월말인 금융업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003년에는 543개 조사대상법인 중에서 364개 기업이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이 비율은 67.0%를 기록하였다.

<표 IV-1> 분석대상회사

(단위: 개사, %)

	배당회사			무배당회사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소계	제조업	비제조업	소계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1994	254	63	317 (85.2)	43	12	55 (14.8)	297	75	372 (100.0)
1995	260	63	323 (81.8)	54	18	72 (18.2)	314	81	395 (100.0)
1996	265	67	332 (79.0)	66	22	88 (21.0)	331	89	420 (100.0)
1997	220	54	274 (63.3)	117	42	159 (36.7)	337	96	433 (100.0)
1998	215	54	269 (61.1)	128	43	171 (38.9)	343	97	440 (100.0)
1999	243	66	309 (65.9)	125	35	160 (34.1)	368	101	469 (100.0)
2000	236	62	298 (62.0)	139	44	183 (38.0)	375	106	481 (100.0)
2001	226	62	288 (58.5)	157	47	204 (41.5)	383	109	492 (100.0)
2002	265	71	336 (64.6)	140	44	184 (35.4)	405	115	520 (100.0)
2003	285	79	364 (67.0)	136	43	179 (33.0)	421	122	543 (100.0)

주: ( ) 안은 전체 분석대상회사에 대한 비중임.

## 2.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규모 추이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배당가능이익 규모와 배당이 가능한 이익 중

에서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sup>22)</sup>. 배당가능이익의 규모는 1994년 1조 5,814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27조 2,530억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 중에서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의 규모는 1994년에 8,94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그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6조 4,703억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에 각각 49억원 및 28억원에 불과하였던 1사당 평균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각 748억원 및 178억원에 달하였다<sup>23)</sup>.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1997년 이전에는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비중이 50% 내지 60%대를 기록하였으나, 1997년 이후에는 이 비중이 10%대나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익의 사내유출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2001년 이후 이 비율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1997년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추이는 배당회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23) 1999년에 1개사당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인 1998년이나 다음 연도인 2000년에 비해 많았던 이유는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배당가능이익이 1999년 13조 4,683억원을 기록함으로써 1998년의 9,114억원, 그리고 2000년의 3,333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lt;표 IV-2&gt;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 추이

(단위: 개사, 억원, %)

연도	회사수	배당가능이익 (A)	배당금 (B)	비율 (B/A)	1사당 평균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1994	317	15,815	8,943	56.5	49.9	28.2
1995	323	19,798	12,026	60.7	61.3	37.2
1996	332	22,274	11,179	50.2	67.1	33.7
1997	274	105,859	8,380	7.9	386.3	30.6
1998	269	158,678	12,587	7.9	589.9	46.8
1999	309	338,154	28,186	8.3	1,094.3	91.2
2000	298	188,304	32,663	17.3	631.9	109.6
2001	288	185,277	30,960	16.7	643.3	107.5
2002	336	275,080	49,658	18.1	818.7	147.8
2003	364	272,531	64,704	23.7	748.7	177.8

### 3. 배당성향 추이

#### 가. 전체 기업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의 비율로서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나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을 모두 포함한 조사대상기업 전체의 배당성향은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1994년 배당성향은 21.9%였으나, 1996년에는 5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수익이 크게 악

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을 일정수준 안정적으로 유지한 결과로서 그동안 정부의 배당제도개선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상장법인들의 주주중시경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sup>24)</sup>.

1997년과 1998년은 경제위기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경기침체가 이어졌으며, 기업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되어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지급의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산출이 불가능하였다. 그후 배당성향은 1999년에 24.9%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에는 41.9%에 달하였다. 이는 일부 상장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1999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배당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결과였다<sup>25)</sup>.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다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배당성향은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4) 증권거래소, 『주식』, p. 51, 1997. 5.

25)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1999년 2,244억원 흑자에서 2000년 2조 4,868억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현대건설은 1999년 1,209억원 적자에서 2000년 2조 9,805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lt;표 IV-3&gt; 전체 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단위: 개사, 억원, %)

연도	회사수	당기순이익 (A)	배당금 (B)	배당성향 (B/A)
1994	372	40,812	8,943	21.9
1995	395	65,765	12,026	18.3
1996	420	22,271	11,179	50.2
1997	433	-1,502	8,380	-
1998	440	-45,468	12,587	-
1999	469	113,031	28,186	24.9
2000	481	77,960	32,663	41.9
2001	492	103,885	30,960	29.8
2002	520	241,256	49,658	20.6
2003	543	279,280	64,704	23.2
연평균	457	89,729	25,929	28.9

<표 IV-3>에서 구한 배당성향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한다면 의미가 있는 수치이지만, 엄밀하게 보아 이 수치는 실제보다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배당성향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을 하는 기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비해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sup>26)</sup>, 배당금의 규모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배당을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배당성향은 <표 IV-4>에서

26) 적자기업의 상당부분은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배당을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많다.

IV.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49

보는 바와 같다. 배당을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배당성향은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성향에 비해 2003년 한 연도만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배당성향은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단위: 개사, 억원, %)

연도	회사수	당기순이익 (A)	배당금 (B)	배당성향 (B/A)
1994	317	46,088	8,943	19.4
1995	323	70,721	12,026	17.0
1996	332	37,632	11,179	29.7
1997	274	34,354	8,380	24.4
1998	269	63,900	12,587	19.7
1999	309	145,613	28,186	19.4
2000	298	170,628	32,663	19.1
2001	288	144,746	30,960	21.4
2002	336	268,223	49,658	18.5
2003	364	275,487	64,704	23.5
연평균	311	125,739	25,929	20.6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분포는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배당성향이 20% 초과 30% 이하인 기업이 91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기업의 26.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배당성향이 10% 초과 20% 이하인 기업이 82개로 전체 기업의 23.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배당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도 21개로 전체 기업의 6.0%나 차지하고 있

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당기순이익은 적으나 이익잉여금 등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이다.

배당기업의 배당성향은 전체 배당기업의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 총액으로 나누어 구한 값보다는 개별기업의 배당성향을 단순평균하여 구한 값이 더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자기업일지라도 이익잉여금 등으로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이 아주 적을지라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배당성향을 단순평균하게 되면 실제로는 무의미한 수치를 얻을 수도 있다.

<표 IV-5> 2003년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분포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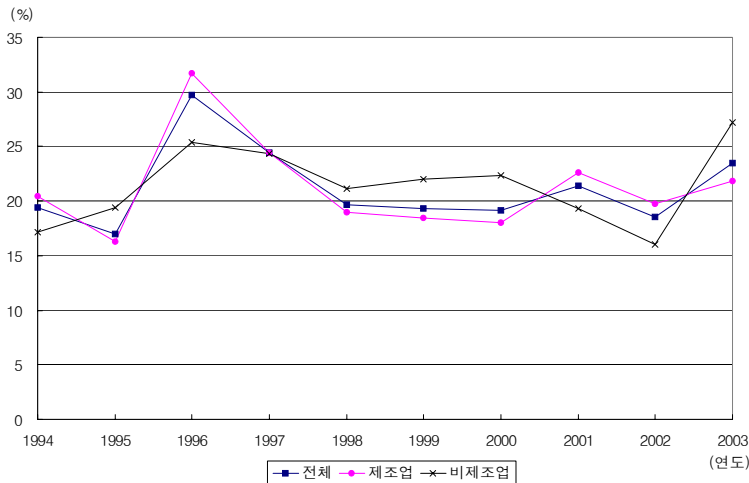
배당성향	회사수 <sup>1)</sup>	비중
10% 이하	38	10.9
10% 초과 20% 이하	82	23.6
20% 초과 30% 이하	91	26.1
30% 초과 40% 이하	50	14.4
40% 초과 50% 이하	30	8.6
50% 초과 60% 이하	14	4.0
60% 초과 70% 이하	6	1.7
70% 초과 80% 이하	5	1.4
80% 초과 90% 이하	8	2.3
90% 초과 100% 이하	3	0.9
100% 초과	21	6.0
합 계	348	100.0

주: 1) 2003년 배당기업의 전체 364개사 중에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16개 회사는 제외함.

나. 업종별

배당성향의 추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림 IV-1]과 같다.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의 어느 일방이 다른 업종에 비해 배당성향이 매년 높다거나 낮다고 볼 수 없었다. 제조업의 배당성향은 비제조업의 배당성향에 비해 1994년, 1996년, 2001년, 그리고 2002년에 다소 높았으며, 또한 1995년, 1998년,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3년에는 다소 낮았다. 그리고 1997년에는 제조업의 배당성향과 비제조업의 배당성향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IV-1] 업종별 배당성향 추이



제조업의 각 업종별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1994년의 경우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계 등의 순서로 배당성향이 높았으며, 전기전자, 섬유 의복, 철강 금속 등의 순서로 배당성향이 낮았다. 반면 2003년의 경우 종이목재, 기계, 의료정밀 등의 순서로 배당성향이

높았으며,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의 순서로 배당성향이 낮았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1994년 배당성향이 제일 높았던 비금속광물업이 2003년에 와서는 배당성향이 제일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배당금 규모의 증가 비율이 당기순이익 규모의 증가비율에 비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제조업 전체로는 21%를 전후한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제조업의 각 업종별 배당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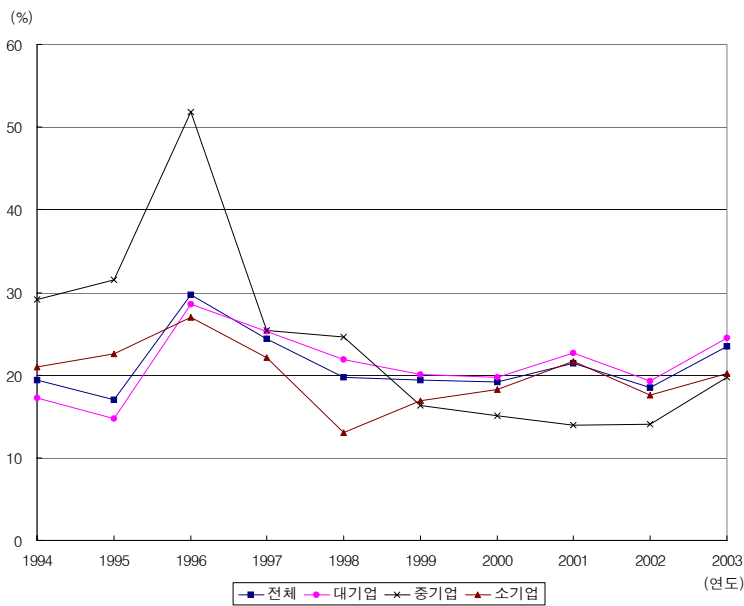
(단위: 개사, 억원, %)

	회사수		당기순이익		배당금		배당성향	
	1994	2003	1994	2003	1994	2003	1994	2003
음·식료품	23	23	1,065	12,544	248	3,629	23.3	28.9
섬유·의복	21	16	981	1,004	203	221	20.7	22.0
종이·목재	10	17	767	1,306	185	522	24.1	40.0
화학	53	71	6,463	22,894	2,211	8,107	34.2	35.4
의약품	20	20	416	2,157	142	461	34.2	21.4
비금속광물	16	17	1,047	5,309	492	846	47.0	15.9
철강·금속	34	36	5,777	29,112	1,194	5,579	20.7	19.2
기계	11	19	246	2,037	96	718	39.1	35.3
전기·전자	43	35	11,931	76,500	925	13,576	7.8	17.7
의료정밀	2	3	85	184	39	58	46.1	31.4
운수장비	19	24	2,705	37,613	697	7,886	25.8	21.0
기타제조업	2	4	70	393	18	103	25.4	26.2
제조업전체	254	285	31,553	191,053	6,452	41,704	20.4	21.8

다. 기업규모별

배당성향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등의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그림 IV-2]와 같다<sup>27)</sup>.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배당성향이 가장 높았던 중기업은 경제위기 이후에 배당성향이 가장 낮았으며, 경제위기 이전에 배당성향이 가장 낮았던 대기업은 경제위기 이후 1999년부터 배당성향이 가장 높았다.

[그림 IV-2] 기업규모별 배당성향 추이



27)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분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같은 분류에 따랐다. 대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75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중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750억원 미만 35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소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35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 4. 배당률 및 배당수익률 추이

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의 액면가 기준 평균배당률은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의 배당금 총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나누어 구한 배당률(배당률 I)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6% 내지 8%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업실적이 호전되고 소액주주운동이 본격화되었던 1999년 10%대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당을 실시한 각 회사의 배당률<sup>28)</sup>을 단순평균하여 구한 배당률(배당률 II)도 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의 배당금 총액을 자본금 총액으로 나누어 구한 배당률(배당률 I)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IV-7> 배당률 추이

(단위: 억원, %)

	자본금 총계 (A)	배당금 총계 (B)	배당률 I <sup>1)</sup> (B/A)	배당률 II <sup>2)</sup>
1994	128,207	8,943	7.0	8.2
1995	146,181	12,026	8.2	8.6
1996	143,194	11,179	7.8	9.1
1997	127,148	8,380	6.6	8.4
1998	142,284	12,587	8.8	9.2
1999	238,141	28,186	11.8	11.6
2000	247,209	32,663	13.2	12.6
2001	231,528	30,960	13.4	13.5
2002	305,345	49,658	16.3	15.9
2003	353,589	64,704	18.3	17.6

주: 1) 배당률 I 은 배당을 실시한 회사 전체의 배당금 총액을 배당을 실시한 회사 전체의 자본금 총액으로 나누어 구한 배당률임.

2) 배당률 II는 각 회사의 배당률을 단순 평균한 것임.

28) 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누어 구한 수치이다.

#### IV.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55

배당수익에 기초한 주식의 장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액면배당률보다는 시가배당률(또는 배당수익률이라고 함)이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배당수익률을 2~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및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표 IV-8>과 같다. 경제위기 이후 금리와 채권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시가배당률은 4%대 내지 5%대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03년의 경우 배당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한다면 배당수익에 기초한 주식의 장기투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나 채권을 사는 경우에 비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 IV-8> 배당수익률 추이

(단위: %)

	배당수익률 <sup>1)</sup>	정기예금 금리 <sup>2)</sup>	회사채 수익률 <sup>3)</sup>
1999	3.2	7.9	10.3
2000	5.5	7.4	7.8
2001	4.3	5.2	7.1
2002	4.8	5.1	5.9
2003	4.7	4.2	5.6

주: 1) 배당수익률은 각 회사의 배당수익률을 단순평균한 것임.

2) 2~3년 미만 정기예금 금리임.

3) 3년물 회사채 수익률임.

자료: 증권거래소, 『주식』, 각년호.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연호.

## 5. 주당 배당금의 증감 추이

배당회사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주당 배당금이 증가한 회사의 비율은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에 비해 최근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1997년 17.9%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그후 다시 증가하여 40% 내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배당회사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주당 배당금이 감소한 회사는 1997년 잠시 급등하였으나 대체로 10% 내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당회사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주당 배당금이 변하지 않은 회사의 비율은 1995년에 비해 최근에 감소하여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에 배당회사 중에서 주당 배당금이 증가한 회사가 급감하고 주당 배당금이 감소한 회사가 급증한 것은 당시 경제위기로 인해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이 적자를 기록하고 배당기업의 당기순이익의 합계액도 대폭 감소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을 하는 기업일지라도 전년도에 비해 주당 배당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IV.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현황 57

<표 IV-9> 주당 배당금 증감분포 추이

(단위: 개사, %)

	주당 배당금 증가회사	주당 배당금 감소회사	주당 배당금 불변회사	기타 <sup>1)</sup>	배당회사 합 계
1995	77 (23.8)	66 (20.4)	158 (48.9)	22 (6.8)	323 (100.0)
1996	92 (27.7)	105 (31.6)	109 (32.8)	26 (7.8)	332 (100.0)
1997	49 (17.9)	151 (55.1)	47 (17.2)	27 (9.9)	274 (100.0)
1998	130 (48.3)	64 (23.8)	71 (26.4)	4 (1.5)	269 (100.0)
1999	169 (54.7)	57 (18.4)	70 (22.7)	13 (4.2)	309 (100.0)
2000	129 (43.3)	76 (25.5)	84 (28.2)	9 (3.0)	298 (100.0)
2001	128 (44.4)	51 (17.7)	99 (34.4)	10 (3.5)	288 (100.0)
2002	167 (49.7)	49 (14.6)	99 (29.5)	21 (6.3)	336 (100.0)
2003	163 (44.8)	72 (19.8)	112 (30.8)	17 (4.7)	364 (100.0)

주: 1) 전년도에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배당 증감여부를 알 수 없는 배당회사임.

### 6. 우리나라 기업 배당정책의 평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정책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 이전의 우리나라의 배당정책의 특징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29)</sup>. 첫째, 배당수익률은 공금리 수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의 배당수익률은 1% 내지 2%대에 머물 정도로 배

29)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 제3장 참조.

당수익률이 공금리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당수입 자체가 투자자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 자본이득만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투자패턴의 투자자만이 존재하게 되어 안정적인 배당수입을 원하는 장기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배당성향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기업들이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한 이유는 자금조달구조가 지나치게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정책당국은 기업이 순이익을 배당으로 사외유출하는 것보다 기업내부에 유보하여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배당정책은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배당수익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1% 내지 2%대에 머물렀으나, 경제위기 이후 4% 내지 5%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위기 이후에 지분비율이 크게 높아진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요구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배당수익률의 인상과는 달리 금리와 채권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2003년에 배당수익률은 2~3년 만기 정기에 금 금리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 되었으며, 또한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보다는 크게 낮지 않은 수준이 되었다. 배당수익에 기초한 주식의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 향후 주식 양도차익의 가능성까지도 있으므로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나 채권을 사는 경우에 비해 반드시 불리하지 않다. 이제는 배당수익에 기초한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만한 환경이 조성될 정도로 기업의 배당정책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배당성향은 경제위기 이전이나 이후를 비교해 보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배당금의 절대액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V.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세제도

### 1.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범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배당소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내국법인의 사원 또는 주주가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하 '이익 등의 배당'이라고 함)이다. 이와 같은 이익 등의 배당에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배당(cash dividend)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형태의 주식배당(stock dividend)을 모두 포함한다. 주식배당은 준비금의 자본전입, 즉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교부와는 다르며,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의 교부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제배당으로 취급한다.

또한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 발전, 운하, 조선 등과 같이 그 건설 또는 준비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건설기간 동안에 이익이 없더라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건설이자의 배당<sup>30)</sup> 역시 배당소득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이자의

---

30) 상법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개업 전 일정한

배당은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는 상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아래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이자의 배당을 이익배당의 선급이라는 입장에서 배당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익배당이 의결된 후에 주주가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한다<sup>31)</sup>. 그리고 위법배당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고 있는 한 과세소득을 구성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을 구성한다. 여기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및 재단을 가리킨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은 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이 그 사원 등에게 배당 또는 분배를 행한다면 당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다.

#### 다. 의제배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이나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 않았지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

---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9 판결

생활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면서 당해 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주 등이 회사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아래에서 열거한 여섯 가지의 경우 주주나 기타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일정한 금액 또는 주식 등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sup>32)</sup>. 즉 아래 열거항목에서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

---

3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액이, 그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함)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 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포함하며, 실무상으로는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한다.

#### 마.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접투자 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신탁이어야 하며,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sup>33)</sup>에 신탁자산의 평균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사. 기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이는 앞의 '가' 내지 '바'에서 언급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동 조항은 사회의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 또는 출현하는 수익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규정방식을 종전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01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시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다.

---

33)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한다.

##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변천과정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sup>34)</sup>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국내의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또한 신투자를 위한 재원을 대부분 외채에 의존하던 1960년대에 자본시장 육성과 내자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였으나 국내자본의 저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투자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단계에 왔으며 국민복지와 세부담의 형평을 중시할 필요성이 제고되어 배당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세법개정시 자본시장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형평과세의 이상에 접근해가는 방향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폐지하되 상장법인에 대한 공제는 존치하도록 조정하게 된 것이다. 1980년 세법개정에서는 배당소득간의 과세형평을 회복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부담의 조정으로 기업의 증자의욕을 고취시켜 재정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비공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도 배당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그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1990년에는 합리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당세액공제방식을 이른바 gross-up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종전에는 배당소득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러한 배당세액공제방식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부담의 경감만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고르게 조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1990년 개정에서는 귀속법인세의 1/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34)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제Ⅲ장에서 논의한 임퓨테이션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7/9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1/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주주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합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보아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1997년에 gross-up비율을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비율을 실제법인세 부담률에 관계없이 19%로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1998년부터 법인단계에서 부과된 세액을 주주단계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2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법인세부담률 25%, 납세자의 한계소득세율 30%인 경우 배당소득세부담률은 6.7%이고,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20% 중 13.3%를 환급하게 된다.

2005년부터 법인세율이 25%와 13%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 세법 개정에서는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비율을 15%로 개정하였다.

&lt;표 V-1&gt;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변천과정

개정 연도	법인주주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	상장법인의 개인주주
1974	산출세액×배당소득 ÷ 종합소득×비공개 법인세율×50%	종합소득과표×배당소득 ÷ 종합소득×비공개법인세율 ×50%	종합소득과표×배당소득 ÷ 종합소득×15%
1978	폐지	폐지	상동
1980	-	·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10% · 배당소득 3천만원 초과:5%	· 좌동 10% · 좌동 5%
1982	-	· 비상장대법인 제외 ·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8% · 배당소득 1천만원 초과:4%	※ 공제율 좌동(상장, 비상장 구분 철폐, 비상장대법인만 공제배제)
1988	-	·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12% · 배당소득 1천만원 초과:120만원 +1천만원 초과액의 6%	
1990	-	·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주주의 배당소득공제율 을 일반법인분 17/99, 공공법인분 1/12로 개정	
1993	-	·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주주의 배당소득공제율 을 22/100로 개정	
1996	-	·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주주의 배당소득공제율 을 19/100로 개정	
1997	-	· 법인세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비율을 다음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함 - 종전과 같은 19% -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 = 법인세부담률/(1-법인세부담률)  * 공제율 최고한도는 38%로 함 * 소수점 미만은 절사 * 법인세부담률=법인세납부세액/법인의 소득금액	
1999	-	·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비율을 실제법인세 부담률에 관 계없이 19%로 함	
2004	-	·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비율을 실제법인세 부담률에 관 계없이 15%로 함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sup>35)</sup>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에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지만, 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을 지배하거나 기업확장을 위하여 주식을 매매한다기보다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되었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1999년에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동일성 정도를 감안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을수록 익금불산입액을 크게 하는 한편, 차입 또는 연쇄출자에 의한 계열확장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차입금이 있거나 자회사가 타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을 일부 배제하였다.

2000년에 일반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의 허용비율은 지주회사의 그것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조정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조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의 실체로 볼 수 있는 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인 연

35) 우리나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제Ⅲ장에서 논의한 수입배당 공제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일단 유보하는 대신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의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의 허용비율을 100%로 개정하였다.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계약형투신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사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증권투자회사는 제외)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사모방식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유동화전문회사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적용한다. 이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한 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표 V-2>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 변천과정

개정 연도	기관투자자	지주회사	일반법인
1983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10%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	-
19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li> <li>- 상장·등록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30% 초과: 90%</li> <li>지분비율 30%: 60%</li> </ul> </li> <li>- 비상장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80% 초과: 90%</li> <li>지분비율 50~80%: 60%</li> </ul> </li> </ul> *지분비율 및 배당소득금액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	-
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등록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40% 초과: 90%</li> <li>지분비율 30~40%: 60%</li> </ul> </li> <li>- 비상장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100%: 100%</li> <li>지분비율 80% 초과: 90%</li> <li>지분비율 50~80%: 6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li> <li>- 상장·등록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30% 초과: 50%</li> <li>지분비율 30% 이하: 30%</li> </ul> </li> <li>- 비상장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50% 초과: 50%</li> <li>지분비율 50% 이하: 30%</li> </ul> </li> </ul>
2001	-	·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
2003	-	·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손자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함	-
200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인의 수취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li> <li>- 비상장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비율 100%:100%</li> </ul> </li> </ul>

&lt;표 V-2&gt;의 계속

개정 연도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998	-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한 지원 -요간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증권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1999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범위 내에서 공제	-	-

### 3. 현행 세법상의 배당소득과세제도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부담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개인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가.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부분조정방법으

로서 임putation(impua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과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임putation(impuation)방식이란 소득세를 과세할 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동 합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소득공제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 때 배당가산액, 즉 귀속법인세를 gross-up금액이라고 한다. 즉 법인단계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최저 법인세율을 부담하였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한 금액(법인세 과세전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가산한 법인세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당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gross-up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gross-up 금액} = (\text{배당소득} \times \frac{1}{1-0.13}) \times 0.13$$

2005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고세율 25%, 저세율 13%) 중 저세율인 1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sup>36)</sup>, gross-up율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ext{gross-up율} = \frac{0.13}{1-0.13} = \frac{15}{100}$$

36) 2002년부터 최저법인세율이 15%로 개정되었으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gross-up율은 16%를 기초로 산정된 19%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최고법인세율이 25%, 최저법인세율이 13%로 개정됨에 따라 gross-up율은 최저법인세율 13%를 기초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말의 세법개정에서는 소득세법상 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sup>37)</sup>. 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반면, 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의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배당소득을 여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개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당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배당소득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 ②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 ③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개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 즉 현행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종합과세의 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과 더불어 배당소득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시행이 유보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면서 그 동안 종합과세에서 누락되었던 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금융권의 배당,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및 기타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된다. 2005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하여 15.4%이다.

그러나 거주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동

---

37)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법인의 주식을 상장 및 협회등록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소득에 대하여 액면가가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액면가가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을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나. 법인세법상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익금산입함으로써 당해연도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즉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타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완료된다.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세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분부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 중 아래의 ① 및 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③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8)</sup>.

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

38) 2004년 말 세법개정에 의해 2005년부터 지분율이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서 100% 익금불산입을 허용한다.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내국법인이 위의 ①에 제시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중 위의 ① 및 ②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아래에 열거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 ② 기관투자자의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입배당금액<sup>39)</sup> 및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입배당금액
- ③ 배당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면, 익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과정을 거쳐서 산출되는 것이다.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익금불산입대상액} - \text{익금불산입차감액}$$

여기서

---

39) 기관투자자가 10% 이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9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익금불산입대상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50% 또는 30%)

$$\text{익금불산입차감액}^{40)}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다른 내국법인 주식가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비율}}{\text{자산총액}}$$

이 때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6종)를 제외한 차입금이자를 말한다. 또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가액이란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자산총액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다.

<표 V-3>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sup>1)</sup>	익금불산입 비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sup>2)</sup>
	50% 초과	50%
	50% 이하	30%

주: 1) 지분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2) 2004년 세법결정시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100%로 개정되었음.

#### 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40) 익금불산입차감액의 계산은 배당금지급법인별로 계산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가 자회사<sup>41)</sup>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아래의 ① 및 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③ 및 ④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위의 ①에 제시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③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위의 ① 및 ②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sup>42)</sup>
- ④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41) 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4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금액을 감안하여 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sup>43)</sup>

이러한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제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 준일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와 같은 법인세법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하는 제도로서 30~50%의 익금불산입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표 V-4>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비율

출자대상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40% 초과	90%
	30~40% 이하	60%
비상장법인	100%	100%
	80% 초과	90%
	50~80% 이하	60%

- 주: 1. 지분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불산입됨.

4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 VI.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

### 1. 미국의 배당소득세제

#### 가. 배당소득의 범위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상 배당금은 법인이 주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분배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① 1913년 2월 28일 이후에 누적된 E&P(earnings and profits)
- ② 당해 연도의 E&P(과세연도 말의 E&P로서 그 연도중에 이루어진 분배액공제 전의 금액을 말한다). 또한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의 E&P 금액은 문제삼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배는 우선 당해연도의 E&P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누적된 E&P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sup>44)</sup>.

여기에서 E&P(earnings and profits)란 과세소득에서 출발하여 원칙적으로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정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 ① 주정부채권의 수취이자와 같은 비과세소득을 가산한다.
- ② 자본적 지출 이외의 비용 또는 손실로서, 특히 과세상 과세소득에 가산된 금액을 감산한다. 예를 들면 교제비의 손금불산입액이 이에 해당한다.
- ③ 1972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손금으로 공제된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가산한다.

---

44) IRC 제316조(a).

- ④ 가속상각비의 경우, 가속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의 경우 정액법에 의한 상각제도에 의해 상각비를 산정한다. 또한 IRC 제 179조 자산의 취득가액이 손금으로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 손금으로 공제된 금액을 5년간에 걸쳐 균등 안분한다.
- ⑤ 법인세액을 감산한다.
- ⑥ 법인에 의한 분배액을 공제한다.
- ⑦ 캐피털로스(capital loss)가 캐피털게인(capital gain)보다 많은 경우 초과액을 감산한다.
- ⑧ 비과세되는 채권의 수취이자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는 지불이자를 감산한다.

또한 분배금의 원천이 되는 E&P와 관련해서는 당해연도의 E&P가 그 연도에 이루어진 분배액 이상인 경우 분배액의 전액은 수취배당이 된다. 또한 어떤 연도에 있어서 현금에 의한 배당액이 그 연도의 E&P를 초과하는 경우 각 분배시에 해당연도 E&P에서 분배된 것으로 하는 금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분배금액} = \frac{\text{당해연도의 E\&P}}{\text{분배액의 합계금액}}$$

현행 미국세법(IRC)은 주주가 주식을 분배받는 경우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5)</sup>.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주에 대한 주식분배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분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이 특정주주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면 비안분적 주식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sup>46)</sup>. 비안분적

45) IRC 제305조(a)

46) IRC 제305조(c)

주식분배로 의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47)</sup>.

- ① 전환우선주의 전환비율 변경
- ② 상환가격의 변경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설정
- ④ 배당과 유사한 정기적 상환계획
- ⑤ 기타 상대적인 지분의 변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거래

##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 1)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1% 세율의 특수원천세(back-up withholding tax)를 부과한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1986년의 세제개혁 이전에는 개인단계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100달러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sup>48)</sup>. 또한 수취배당소득공제의 폐지와 관련하여 1992년에 발표된 재무부의 보고

47) 이준규·김진수(2002), pp. 71~72.

48) 이 세제개혁의 원안이 된 1984년의 재무부 보고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으로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의존심화, 투자자금의 배분 왜곡, 저축·투자억제 등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수취배당에 대한 반액의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100달러까지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투자자금의 효과가 적은 반면 세수의 감소효과가 크므로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富永 秀和(1997), 『世界各國の證券稅制』, 稅務研究會 出版局, p. 121.

서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과세를 통합함으로써 기업형태나 자금조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을 지키는 4가지 방안, 즉 수취 배당공제방식, 주주할당방식, 포괄사업소득세방식,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재무부는 주주할당방식은 집행상 곤란할 뿐 아니라 외국투자가 및 비과세투자가 등에게 이익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적당하고, 임퓨테이션방식도 복잡하므로 수취배당소득공제방식이 상대적으로 간소하고 법 개정도 용이하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부의 보고는 입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입법화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법인세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배당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총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일정부분 익금에 불산입함으로써 소득공제하고 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총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우선 법인이 미국 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수령하고 배당수취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및 가치로 판단하며, 배당우선주는 포함하지 않는다)을 2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수취배당의 7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70%의 특별공제율은 당해 주식이 차입자금으로 조달된 투자용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49)</sup>. 또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투자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로부터 수령하는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에 대해서도 70%의 특별공

49) IRC 제246(a)조 (a).

제가 적용된다. 법률로 정하고 있는 투자회사란 과세연도의 모든 날에 있어서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미국내 법인을 말한다.

- ① 1940년의 투자법에 의해 관리운영회사(management company) 또는 투자 트러스트로서 등록된 것
- ② 당해 법률에 의해 사업개발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로의 선택을 한 것
- ③ common trust fund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해 투자회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서 은행이 운영하는 펀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편 배당수취법인이 배당지급법인 주식의 20~80%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80% 공제, 그리고 이 지분율이 80%를 초과하면 수취배당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투자법인(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그룹 내의 법인은 그룹 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100%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이 없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은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수행된 사업에서 발생하여 미국에 의해서 과세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에 대해서는 70%(소유지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80%)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계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국내법인은 100% 공제가 허용되고 해외영업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100%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다. 배당소득세의 폐지에 관한 최근 미국의 논의

미국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경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왔다. 1992년 1월 발표된 재무부(U.S. Treasury Department)의 보고서 『개인소득세제와 법인소득세제의 통합(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과 미국 법연구소(the American Law Institute)의 보고서 등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고자 하는 과거 연구논문들은 법인세의 이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sup>50)</sup>.

재무부는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면제할 경우 10년간 약 3,640억달러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10여년전 재무부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과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의 증가 없이도 해마다 2003년의 달러가치로 약 360억달러에 해당하는 0.5% 가량의 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부를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인해 투자가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임금도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sup>51)</sup>.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제성장의 증대 : 법인세의 이중과세는 세후 자본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는다면 자본축적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임금상승도 가능하다.
- ② 배당에 대한 조세의 왜곡 제거 :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정책이다. 세금이 없다면 고수익사업에 투자할 능력이 생기므로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정책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의 이중과세는 배당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세는 내부자금이 부족한 신생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자금확보를 위해 자본시장

50)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liminating the Double Tax on Corporate Income.

51)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liminating the Double Tax on Corporate Income.

에 의존하게 만든다. 신생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왜곡된 배당소득세제도의 결과로 형성된 유보이익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내부자금으로 투자가능한 능력을 지닌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대시킨다. 또한, 법인세의 이중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보다는 채투자수익을 선호하게 되게 된다.

- ③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배당은 직접적인 기업지배력을 지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수익을 제공한다. 배당은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수익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경영자가 임의로 사용가능한 현금을 감소시켜 경영자로 하여금 주주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구매보다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 ④ 자기자본에 대한 조세의 왜곡 제거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개인소득세율로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부채자금조달보다 자기자본조달(new equity financing)이 세제상 불리하다.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중과세제도에서 나타나는 높은 부채비율로 인한 자본시장의 위험과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⑤ 경영전략이 조직형태를 정하도록 함 : 이중과세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어, 소유자지배의 가족경영방식이나 S-corporations, 파트너십, sole proprietors, 비영리법인과 같은 비법인형식의 경영방식이 선호되고 법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자본할당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3년 부시(Bush) 정부는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폐지를 제안하였다. 부시대통령은 경제부양을 위한 ‘성장과 고용 계획(a growth and jobs plan)’을 발표하였다. 부시의 경제계획의 세 가지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소비를 촉진시킨다. 둘째,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셋째, 실업자에 대한 중요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제계획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 특히 고령자들이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폐지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된다. 대략 3천 5백만 미국 가구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배당소득을 받고 있고, 이러한 배당소득 중 절반 가량이 미국 고령자들의 퇴직 후의 주요 소득 원천이 되고 있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 단 한 번만 과세되어야 한다. 동일 소득원천에 대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두 번 과세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고령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부시의 경제계획이 실행된다면 배당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부담 감소액의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배당소득을 받는 980만명의 고령자를 위한 세부담 절감액은 평균 936달러 가량 될 것이며, 2003년 현재 200억달러 가량이 경제순환으로 환원될 것이다<sup>52)</sup>.

부시정부의 배당소득세 폐지에 관한 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러한 정책을 찬성한 것은 민주당이었고 반대한 것은 공화당이였다. 1976년 민주당 카터(Jimmy Carter)는 주요 선거공약으로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를 철폐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 법인소득에 대해 단 한 번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978년 세계개편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실패했다. 기업경영자들이 이중과세 폐지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제기한 것이다. 첫째,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대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유보이익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는 과세소득에서 차감가능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주주로 하여금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 기업경영인들이 임의로 그들의 임금을 조정하거나 주주의 몫으로 돌아갈 이익으로 특권적 소비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004년 현재, 제108회(2003~2004) 연방의회의 개정안 진행상태를

52) The White House: Jobs & Economic Growth.

살펴보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철폐를 위한 1986년의 내국세법(the Internal Revenue Code) 개정을 위해 2003년 7월 1일 하원에 회부되고 세입위원회(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는 흔히 기업형태 중 법인에 대한 불리한 요소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배당소득세를 지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를 독립된 납세자로 볼 수 있다. 즉, 법인과 주주는 각각 독립된 경제주체이다. 이중과세의 기본개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it is income that is taxed)’는 것이다. 경제주체는 세금을 납부한다. 소득은 공공재를 소비한 경제주체에게 공공재의 원가(the cost of public goods)를 배부하는 편리한 수단에 불과하다<sup>53)</sup>.

## 2. 영국의 배당소득세제

### 가. 배당소득의 범위

기업은 주주에게 다양한 형태로 잉여금을 분배(distributions)하며, 흔히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나 그 외의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 모든 잉여금의 분배가 조세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잉여금 분배에 대한 세법 적용은 ‘적격분배(qualifying distribution)’인가 또는 ‘부적격분배(non-qualifying distribution)’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법인의 모든 분배는 ‘적격분배’로 보나, 상환가능한 주식자본금(redeemable share capital), 상환가능한 보너스유가증권(redeemable bonus security) 등은 제외한다. 이는 개인이 분배금을 받

53) Internal Revenue Service: Double taxation of dividends(A Clarification).

있을 때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인이 영국내 거주하는 개인주주에게 적격배당을 한 경우 개인주주는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를 받는다. 부적격배당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분배금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적격분배에 해당되면 지급한 자와 받은 자 모두 금액과 그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액(tax credit)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배(distribution)’란 다음을 포함한다<sup>54)</sup>.

- ① 법인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배당
- ② 현금지급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기업의 자산을 법인의 지분 (share)<sup>55)</sup>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분배금. 단, 다음은 제외한다.
  - (a) 자본금 상환을 나타내는 것
  - (b) 분배목적으로 법인이 수령한 새로운 대가(new consideration)<sup>56)</sup>
- ③ 모든 상환가능한 주식자본금 또는 모든 유가증권

54) ICTA 제209조 제2항.

55) ‘지분(shares)’에는 주식(stock)과 법인의 구성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지분소유자이기 때문에 지분과 관련되어 어떤 사항이 적용되거나, 지분과 관련하여 부여된 청구권 또는 요구사항으로 인해 어떤 사항이 적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특정시점에 지분소유와 관련하여 지분소유자 또는 그의 개인적 대리인에게 어떤 사항이 적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56) ‘새로운 대가(new consideration)’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법인의 자산으로 불입되지 않은 대가를 말한다. 이는 분배금을 자본회함으로써 기업이 유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이 발행되고 난 후에 주식자본금이 불입될 때 추가로 불입된 부분은 ‘새로운 대가’로 본다. 차입(loan)하는 것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흔히 ‘새로운 대가’의 개념과 일치된다. 만일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차입(loan)이 참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라면 세금이 부과된다.

④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자산 이전시 법인구성원이 받은 혜택이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을 초과한 경우 받은 혜택의 가치는 시장가치에 따라 결정한다. 법인은 시장가치와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본다.

⑤ 주식자본금의 상환후 불입된 주식자본금에 대한 주식발행.

주식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조작된 지급액(manufactured payments)’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작된 지급액은 이러한 거래가 없었다면 거래상대방이 받았어야 할 정당한 실제 이자나 배당금을 은닉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예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가능하나 특히 주식을 대여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 빈번하다. 1997년 7월 1일부터 ‘조작된 배당(manufactured dividend)’<sup>57)</sup>과 관련된 복잡한 과세조항이 단순하게 변경되었다<sup>58)</sup>. 영국내 소재하는 법인에 의해 지급되는 조작된 배당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할 배당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배당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배당을 지급한 법인은 1999년 4월 5일까지는 예납법인세(ACT)와 관련한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그후 예납법인세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는 조작된 배당과 관련한 예납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배당을 받은 주주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실제 배당을 받은 것처럼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작된 배당’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배당일(dividend date)이 지나 대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대여자가 만일 주식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수취했을 실제 배당금 해당액을 받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대여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지불한 것은 조작된 배당으로 본다. 이와 유사하게 공매한 배당부주식을 배당락주식으로 상환한 경우, 주식매입자가 실제 받았어야 할 배당을 받지 않고

57) ‘조작된 배당(manufactured dividend)’은 우리나라의 의제배당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58) ICTA 제23A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대가는 조작된 배당으로 본다. 또한 환매계약에서 주식매입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이 판매자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것에 해당한다면 조작된 배당으로 본다.

그러나, 수취인이 수익권이 없는 실제 배당액을 단순히 전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면 조작된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통포지션에 의해 배당부주식을 팔고 단지 소유권 변동을 반영하는 기업의 등록이 늦어졌기 때문에 배당을 수취하게 된 경우, 배당락주식을 매입하고 단지 소유권을 등록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된 경우, 수익권을 가진 소유자에게 배당을 전달하기 위한 수령 명의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 나. 배당소득과세제도

### 1) 소득세

영국은 1973년 4월 1일부터 기업소득 평가에 있어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부분조정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 부분조정제도는 일단 법인단계에서는 배당분과 유보분을 구별하지 않고 과세하는 대신 개인단계에서는 수취배당액에 수취배당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수취배당액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즉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를 부분적으로 주주에게 귀속시켜 주주가 법인에 의해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감면권을 받는 제도이다.

1999년 4월 6일 이전에 수취배당액의 일정비율(gross-up율)이 20/80<sup>59)</sup>이었으며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개인주주에게 환급되었다.

59) 1993년 4월 5일 이전의 gross-up율은 25/75였으며, 1993년 4월 6일부터 1994년 4월 5일까지는 22.5/77.5였으며, 1994년 4월 6일부터 1999년 4월 5일까지는 20/80이었다.

gross-up율을 20/80으로 함으로써 배당소득금액(즉, 수취배당액  $\times 125\%$ )의  $20\%(=25/125)$ 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받게 되며, 이 20%는 개인소득세의 저세율구간 세율이었던 20%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9년 4월 6일 이후의 세제개편으로 예납법인세(ACT)가 폐지되고,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외 저축소득이 낮은 세율에 머무르게 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초기 또는 기본세율구간 모두 10%, 고세율구간에 속한 소득은 32.5%가 적용되었다<sup>60)</sup>.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감소와 부합하여 주주에 대한 gross-up율을 1/9로 축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취배당액과 귀속법인세의 합인 배당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게 되고, 이 10%는 개인소득세의 저세율구간 세율인 10%와 일치하는 동시에 배당소득의 저세율구간 및 기본세율구간 세율인 10%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초과 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게 되었지만<sup>61)</sup>, 1/9의 배당세액공제액을 수취한 배당금과 합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변함이 없다.

영국의 소득세법은 저축소득, 비저축소득, 배당소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동일범주 내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해 각각 누진과세하고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세액을 구하는 일종의 분리과세체계를 취하고 있다. 배당소득(수취배당액과 귀속법인세의 합)은 Schedule F항목에 해당하며, 기본세율구간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고세율구간에 속한 소득은 32.5%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비저축소득을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저축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

60) 영국의 소득세는 과세소득 1,960파운드까지는 저(lower)세율구간, 1,961파운드부터 30,500파운드까지는 기본(basic)세율구간, 30,5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는 고(higher)세율구간으로 구분한다. 저세율구간 세율은 10%, 기본세율구간 세율은 22%, 고세율구간 세율은 40%이다.

61)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주의 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여야 한다. 즉, 배당소득은 맨 위의 부분(top slice)으로 간주된다<sup>62)</sup>.

## 2) 법인세

영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배당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금(withholding taxes)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1999년 4월 6일 전후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1999년 4월 6일 이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예납법인세(ACT : Advance Corporation Tax)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예납법인세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적격배당이 이루어진 회계기간에 대한 총법인세액에서 차감되었다.

법인이 단순히 분배금을 배분하는 도관(conduit)의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예납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과 예납법인세(ACT)의 합을 ‘면제지급액(frunked payment)’이라 하였다. 배당을 받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영국내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세액공제액을 합한 소득을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 FII)’이라 하였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면제지급액과 면제투자소득이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을 상쇄한 결과에 따라 예납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즉, 예납법인세는 동일기간에 해당하는 면제투자소득을 초과하는 면제지급액에 대해서만 납부되었다. 면제투자소득이 면제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후연도로 이월하여 면제지급액이 발생한 경우 상쇄시켰다.

예납법인세액은 법인세과세 후 분배되는 배당금(즉, 주주가 받은 배당금)의 20/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인에 환급되지는 않지만 분배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이익에 대한 총법인세액(CT: Corporation

---

62) 박정수(2004), p. 61.

Tax)과 상쇄되었다<sup>63)</sup>. 즉, 총법인세액(CT)에서 예납법인세(ACT)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법인세(MCT: Mainstream Corporation Tax)라고 하였다(CT-ACT=MCT). 예납법인세는 세액공제액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지급받은 배당금과 세액공제액을 합한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되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예납법인세액은 면제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세의 저세율구간 세율과 일치하도록 고정되었다.

1999년 4월 6일에 예납법인세가 폐지되어 적격분배에 대한 예납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1999년 4월 6일 이후의 분배액에 대해서는 면제투자소득과 상쇄되지 않는다. 또한, 총법인세액(CT)에서 예납법인세를 공제하던 것도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배당을 받은 법인이 다른 영국내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된 세액공제액을 합한 소득인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 FII)'은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면제투자소득에는 기업집단소득(group income)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99년 4월 6일 이전에는 예납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업집단(group)내에서 배당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되며, 이후 예납법인세가 폐지된 후에는 동일 기업집단의 구성원에 의한 배당이 해당된다. 1999년 4월 6일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제투자소득은 여전히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법인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되지 않는다<sup>64)</sup>.

63) 법인세액(CT)과 상쇄되지 못한 예납법인세액은 'surplus ACT'라 한다. 1999년 4월 6일 이전에는 6년간 소급공제하거나 무한히 이월공제가 가능하였다. 이른바 'shadow ACT'라 불리는 '해소되지 않은 surplus ACT'는 1999년 4월 6일 이후 예납법인세가 폐지됨으로써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shadow ACT는 이후의 과세연도로 이월공제되어 상쇄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shadow ACT system'을 따라야 한다.

64) 주식거래를 통해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이 아니라 거래소득(trading income)으로 과세된다. 또한, 법인이 영국내 소재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며, 이중과세조정을

3. 독일의 배당소득세제<sup>65)</sup>

## 가. 배당소득의 범위

소득<sup>66)</sup>의 한 부분인 소득세법 제20조의 의미의 소득(금융자산)은 자본수익세에 의하여 원천징수방식으로 과세된다. 자본수익세는 근로소득세와 함께 독자적인 세목이 아니며 단지 소득세 체계의 일부분이다. 자본수익세는 우선 비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세액결정을 받게 되면 원천징수된 자본수익세는 최종적인 납세액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자본수익을 포함한 총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수익도 총소득 수준과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비례세율인 자본수익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개별적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수익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 사이에 망라되어 있다. 우선 주식회사의 이익이나 기타 수익과 유한회사 등으로부터의 이익 배분 등의 수익이다. 둘째, 익명사원(Stiller Gesellschafter)으로서 받는 수익이며, 셋째로 일정한 요

---

목적으로 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국내 소재하지 않는 법인에게는 임퓨테이션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5) 이 절은 김유찬(2001, 2004)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66) 독일의 소득세법은 다음 7가지 유형의 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① 농업 및 산림업 소득 ② 사업소득 ③ 독립적 활동소득 ④ 비독립적 활동소득 ⑤ 자본수익 ⑥ 임대소득 ⑦ 기타소득. 위 ①~③에 해당하는 소득유형에서의 소득금액은 이익(혹은 이득수입: Gewinneinfuenfte)이라고 한다. 위 ④~⑦의 다른 소득유형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잉여수입(Ueberschusseinkuenfte)이라 한다. 소득세에서 소득과 각 소득유형의 개념을 구별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각 소득유형의 금액들을 합쳐서 계산되며 따라서 소득은 각 소득유형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소득만 존재한다. 이 중 자본수익은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익계산이 이루어진다.

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 등이 중요한 자본수익세의 과세대상이며 여기에는 또한 어음의 할인액수입(Diskontobetrag von Wechseln)도 포함된다.

세율은 자본수익의 종류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주식회사의 이익이나 기타 수익과 유한회사 등으로부터의 이익 배분 등의 배당적 성격의 자본수익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두 번째로 이자나 익명사원(Stiller Gesellschafter)으로서의 받는 수익 등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에 몇 가지 특별한 형태의 자본수익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 세율은 그러나 채무자가 자본수익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채권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25%, 33.33% 또는 42.8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sup>67)</sup>. 자본수익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총액)기준으로 원천징수되며 필요경비나 특별지출 등은 공제될 수 없다. 연말에 개인별 총소득을 고려한 소득세액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조세채무관계는 종결된다.

자본회사<sup>68)</sup>와 주주 사이의 거래도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고려된다. 그러나 회사와 주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쌍방간의 합의가 회사법적인 실제관계를 은폐하고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이용되는 지에 대하여 법인세법<sup>69)</sup>은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적회사의 경우와 달리 자본회사의 소득계산에서는 회사의 소득과 주주의 소득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70)</sup>.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은폐이익배당(verdeckte Gewinn-

67)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

68) 법인세법상 자본회사(Kapitalgesellschaft)의 법적 형태를 갖는 기업에는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주식형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가 해당된다.

69) 인세법 제8조 제3항.

70) 김유찬(2004), p. 157.

nausschuettung)은 자본회사의 자산이 주주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감소되는 것(혹은 자산의 증가가 방해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공개되는 배당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주주가 제공받는 대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이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지는 은페이익배당에서 중요하지 않다. 은페이익배당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대가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 해당된다<sup>71)</sup>.

## 나. 배당소득과세제도

### 1) 개인소득세

독일은 2001년부터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을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의 개인소득과세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는 ‘완전전가제도(Vollanrechnungssystem)’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의 절반을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합산하여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절반소득과세제도(Halfeinkuenftverfahren)’로 전환하였다. 완전전가제도는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을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의 개인소득과세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2000년의 세제개혁으로 2001년부터는 절반소득과세제도로 대체되었는데, 이 제도하에서는 법인배당소득의 절반만 주주단계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입된다. 독일은 2000년 세제개혁으로 배당소득과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시켰다. 그러나 법인에 유보되는 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절반이 다시 한 번 개인단계에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배당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의 합계는 유보소득보다 높게 된다. 법인세의 완전전가제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이웃국가들에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때문에 폐지되게 되었다.

---

71) 김유찬(2004), p. 157.

소득세법 제3조는 법인세 납부후에 주주나 지분소유자에게 분배된 배당에 대하여 50%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으로 산입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의 배당은 소득세법 제32b조에서 규정하는 누진유보 제도<sup>72)</sup>에도 해당되지 않는다<sup>73)</sup>.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때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은 배당의 절반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액은 향후 개인납세자의 연말정산시에 모두 세액공제된다<sup>74)</sup>.

## 2) 법인세

2000년의 세제개혁으로 독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은 <표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하되었다. 2000년까지는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40%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별 없이 모두 25%로 과세하고 있다.

---

72) 누진유보제도(Progressionsvorbehalt : reservation of progression)란 어느 특정 개인에게 비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소득이 비과세 혜택은 누리게 해주더라도 이 소득이 제외됨에 따라 누진적 소득세율하에서 당해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조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혜택은 주지 않기 위하여 적용소득세율산정에서만 비과세소득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이다.

73) 김유찬(2001), p. 24.

74) 김유찬(2001), p. 25.

&lt;표 VI-1&gt;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 인하 내용

(단위: %)

	1999	2000	2001	2005(예정)
법인세율(유보소득)	40	40	25	25
법인세율(배당소득)	40	30	25	25
소득세율(최저세율)	23.9	22.9	19.9	15
소득세율(최고세율)	53	51	48.5	42
비과세소득	13,000	13,500	14,000	15,000

자료: 김유찬(2001) p. 23에서 재인용.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이 수취배당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sup>75)</sup>.

#### 4. 일본의 배당소득세제

##### 가. 배당소득의 범위

일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통상의 배당소득과 간주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통상의 배당소득은 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아래에 열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sup>76)</sup>. 여기에서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는 법인이 확정된 결산에 있어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배당 또는 분배한 것뿐만 아니라 주주 등에 대하여 그 주주 등인 지위에 근거하여 공여한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77)</sup>.

75) 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76)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24조 제1항.

- ① 이익의 배당
- ② 상법 제2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이자의 배당
- ③ 상법 제293조의 5 제1항 또는 자산유동화법 제10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전의 분배(중간배당)
- ④ 잉여금(출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
- ⑤ 기금이자
- ⑥ 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sup>78)</sup>
- ⑦ 특정목적신탁 수익의 분배

한편 일본의 세법상 이익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의미하는 본래의 배당 이외에도 법인이 해산할 때 자본 및 자본적립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행한 경우나 이익적립금의 자본추가 등을 행한 경우 등에는 법인의 유보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익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귀속되었다고 보는 유보이익 상당액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본래의 배당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통상의 배당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간주배당』(みなし配當)<sup>79)</sup>이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통상적인 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고 있다.

일본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주배당은 우리나라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법인(공익법인 등 및 인격이 없

77) 소득세법 기본통달 24-1.

78)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특정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배당소득을 구성하는 배당 등의 범위에 투자신탁 및 특정목적신탁의 수익분배가 추가되었다.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平成 16年版 圖解 源泉所得稅』, 2004, p. 219.

79)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는 사단 등을 제외한다)의 주주 등이 아래에 기재하는 사유에 의해 금전 및 기타 자산의 교부를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과 기타 자산과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 또는 연결개별자본 등의 금액 중에서 그 교부의 원인이 된 주식 또는 출자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이익의 배당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간주배당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합병(적격합병<sup>80</sup>)을 제외함
- ② 분할형분할(적격분할형분할을 제외함)
- ③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주식이 소각된 것을 제외함) 또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
- ④ 주식의 소각(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함)
- ⑤ 자기주식의 취득<sup>81</sup>)
- ⑥ 사원의 퇴사 또는 탈퇴에 의한 지분의 반환

#### 나. 배당소득 과세제도

80)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형분할’이란 합병 또는 분할형분할(분할에 의해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및 기타 자산이 분할법인의 주식 등으로만 교부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분할을 말한다) 중에서 기업그룹 내에서의 조직재편성이나 공동사업을 행하기 위한 조직재편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는 합병법인이나 분할승계법인의 주식 이외의 자산은 교부되지 않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81) 자기주식의 취득에는 아래에서 기재하는 취득을 제외한다.

- ① 증권거래소에서 개설되는 시장에서의 구입
- ② 점두매매등록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의 점두매매에 의한 구입
- ③ 영업의 전부 양수
- ④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한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의 이전
- ⑤ 합병 또는 분할형분할에 의한 주식할당 등
- ⑥ 단주 주주에 의한 단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매수

## 1) 소득세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수취하는 배당수입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부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인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간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거주자에 대해서 국내에서 배당 등을 지불한 자 ②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국외투자신탁 등의 배당 등(배당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특정목적신탁의 수익 분배 중에서 국외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지불되는 것을 말한다)의 국내에서의 지불취급자 ③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국외주식의 배당 등(국외에서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지불되는 것을 말한다)의 국내에 있어서의 지불취급자는 그 지불을 하는 때에 원칙적으로 20%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sup>82)</sup>. 원천징수액과 소득세액과의 차이는 확정신고 때에 청산을 하게 된다. 또한 종합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 ①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 이하인 경우 : 배당소득금액의 10% 상당액
- ②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 아래의 A와 B의 합계액
  - A: 배당소득금액 중 과세총소득금액으로부터 1천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 배당소득금액의 5% 상당금액
  - B: 배당소득금액 중 위의 A 이외의 부분 : 10% 상당액
 그러나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82) 소득세법 제181조 제1항, 제181조 제2호, 조세특별조치법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9조의 2, 제9조의 3.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모든 과세문제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1종목당 1회의 수취금액이 5만엔 이하(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0만엔 이하)인 경우이다. 소액배당신고불요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배당수입에서 이자를 공제하거나 배당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액배당신고불요제도의 이용 여부는 납세자의 자유이며, 확정신고를 하거나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일본은 그동안 개인이 수취하는 중간배당에 대해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과세 대신 3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3년 4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동 세법개정에 의해 일정한 대주주 이외의 자가 지불받는 상장주식의 배당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신고불요제도의 상한액도 철폐되는 등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최근 일본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특례<sup>83)</sup>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개인 대주주<sup>84)</sup>를 제외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2003년 4월 1일 이후에 지불받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15%(개인주민세 5% 별도)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이란 아래와 같다.

- 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등
- ② 점두등록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식

83) 조세특별조치법 제9조의 3, 제1항 제1호

84) 여기에서 개인 대주주란 그 배당 등의 관계된 내국법인의 사업종료일에 있어서 그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식 수 또는 금액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 ③ 점두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
- ④ 점두관리종목주식
- ⑤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등록종목으로서 증권업협회에  
서 비치하고 있는 원부에 등록된 일본은행 출자증권
- ⑥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식 등

더욱이 이와 같은 특례제도는 2003년 4월 1일~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10%(개인주민세 없음), 2004년 1월 1일~200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는 7%(개인주민세 3% 별도)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 이후부터 15%의 소득세율로 원천징수되고, 5%의 개인주민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 나)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한 신고불요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지불받는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있지만 1회에 지불받는 배당 등의 금액이 5만엔(배당 등의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10만엔) 이하의 소액배당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액배당 신고불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액배당의 신고불요제도의 특례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중에서 2003년 4월 1일 이후에 지불받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개인 대주주가 배당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회 지불금액에 관한 적용상한액이 철폐되었다.

#### 다) 공모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배분과 관련한 배당소득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공모증권투자신탁의 수

익분배와 관련한 배당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15%의 원천분리선택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주식 등에 대한 배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율의 특례제도 및 소액배당 신고불요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5)</sup>.

#### 라) 특정투자법인의 투자계좌의 배당 등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을 받을 수 있는 특정투자법인의 투자주(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투자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말한다)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15%의 원천분리선택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율의 특례제도 및 소액배당 신고불요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sup>86)</sup>.

#### 마) 사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등의 수익분배와 관련한 배당소득<sup>87)</sup>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지불되는 배당 등으로서 ① 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 이외의 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의 수익증권, ② 특정목적신탁의 사채적 수익증권<sup>88)</sup>과 같은 사모공사채등 운용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의 수익분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그 중에서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

85) 조세특별조치법 제9조의 3, 제1항 제2호

86) 조세특별조치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87) 조세특별조치법 제8조의 2

88) 사채적 수익증권이란 그 신탁계약에서 자산유동화법 제169조 제4호에 기재하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금액의 분배를 받는 종류의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말한다.

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일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VI-2>와 같다.

<표 VI-2>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변화

	~2003년 3월	2003년 4월~12월	2004년 1월~ 2008년 3월	2008년 4월~
원칙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율	20%			
확정신고불요제도	1종목당 1회 5만엔(연 1회 10만엔) 이하			
원천분리선택과세	1종목당 1회 25만엔(연1회 50만엔) 미만, 발행총주식 5% 미만	제도폐지		
상장주식등의 배당 등 (개인대주주 제외)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율	20%	10%	7% (개인주민세 3%)	15% (개인주민 세 5%)
확정신고불요제도	1종목당 1회 5만엔(연 1회 10만엔) 이하	상한 없음		
원천분리선택과세	1종목당 1회 25만엔(연1회 50만엔) 미만, 발행총주식 5% 미만	제도폐지		
공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 특정투자법 인의 투자주 배당 등	원천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율	15%(개인주민세 5%)		7% (개인주민세 3%)	15% (개인주민 세 5%)
확정신고불요제도	적용하지 않음		적용(상한 없음)	

자료: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平成 16年版 圖解 源泉所得稅』, 2004.

## 2) 법인세

수취배당과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은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개인을 통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되고 있다. 즉 법인의 손익계산에 있어서는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익금에서 이 익금불산입액을 공제함으로써 소득을 계산한다.

그러나 친자회사(親子會社)의 관계가 아닌 주식은 일종의 투자물건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의 배당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실제로는 특정주식 등과 그 이외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익금불산입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배당 등의 지불의무가 확정되는 날(주주총회일 등)의 6개월 전부터 발행된 총주식 수의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특정주식으로 보아 배당금의 전액이 익금불산입된다. 반면에 그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80%만 익금불산입액의 대상이 된다.

한편 배당금의 원천이 되는 유가증권을 단기간 동안만 소유한 경우에는 수취배당금은 익금에 산입된다. 이는 배당락 전후에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법인의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법인이 배당시에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고 배당락이 될 때 매각하면, 매매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고 더구나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의해 이중으로 세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종목의 결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중에서 결산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수량의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의 계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불하는 부채이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취배당의 원금이 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로 된 부채이자를 공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취배당이 전액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익금불산입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 수취배당금 - 단기소유분 배당금 =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
- 익금불산입액 =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 - 부채이자) × 80%(특정주식의 경우 100%)

법인주주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때에는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즉 당해 법인주주의 법인세보다 선납되고 있는 것이며, 차후에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이부분을 차감하게 되고, 공제하지 않는 때 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때에는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 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국제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배당소득과세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표 VI-3>과 같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해 주고 있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는 1/9 gross-up 비율에 의한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해 배당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독일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일본은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소득금액의 10% 또는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주주가 개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검토대상 국가 모두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중과세 조정방법도 국제적으로 선호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15%의 gross-up 비율에 의한

임퓌테이션방식에 의해 배당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영국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검토대상 국가 모두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조정해 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혀 조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저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주주에게는 완전히 조정해주고 있으나 고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의 주주에게는 완전히 조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배당소득금액의 10% 또는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실제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다음으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의 70%, 80%, 10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과 관련된 세액공제액을 합한 소득인 면제투자소득을 소득공제하며, 독일은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 전액을 소득공제하며, 일본은 수입배당금의 8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검토대상 국가는 모두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서 수입배당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배당공제방식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수입배당금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주가 법인인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입배당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검토대상 국가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 전부를 익금불산입하여 공제해 주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개인주주에 비해 법인주주에 대해 이중과세를 더 많이 조정해 주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개인주주가 배당에 대해 또 다시 세부담을 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3>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국제비교

	소득세 (법인이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법인세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한 경우)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li> <li>○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의 세율을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분율에 따라 일정부분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공제</li> <li>· 20% 미만 소유: 수취배당의 70%</li> <li>· 20~70% 소유: 수취배당의 80%</li> <li>· 70% 초과: 수취배당의 100%</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부분임putation제도(partial imputation system) 적용</li> <li>· 배당소득금액=수취배당액+배당가산액</li> <li>· 배당가산액=수취배당액×1/9</li> <li>· 배당가산액만큼 배당세액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투자소득으로 정의하여 전액공제</li> <li>· 면제투자소득=수취배당액+배당가산액</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의 50% 비과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금 전액 소득 공제</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인정</li> <li>·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 이하: 배당소득금액의 10%</li> <li>· 과세총소득금액이 1천만엔 초과: 다음 A와 B의 합계액</li> <li>A: 배당소득금액 중 과세총소득금액으로부터 1천만엔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배당소득금액의 5% 상당금액</li> <li>B: 배당소득금액 중 위의 A 이외의 부분: 10%상당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공제</li> <li>·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 수취배당금-단기소유분 배당금</li> <li>· 익금불산입액=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부채이자)×80%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특정주식의 경우 100%)</li> </ul>

##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 1. 단일 출자자의 경우

#### 가. 분석모형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와 법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를 측정하면 될 것이다. 현행 과세제도만을 고려할 때, 개인기업에 대한 과세는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법인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그 기업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다시 배당과정에서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부담이 크다면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과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기업 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해 보아 법인기업 소득이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절의 분석모형은 이준규·이은상(1996)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준규·이은상의 연구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각각 부가되는 주민세 법인할과 주민세 소득할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였다. 먼저 출자자가 1인인 경우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액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과 배당과정에서 출자자가 부

담하는 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서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_{ci} = I_i \times (t_{ci} + t_{di}) + I_i \times \{1 - (t_{ci} + t_{di})\} \times (t_{pi} + t_{qi}) \quad (1)$$

여기서  $T_{ci}$  :  $i$  법인기업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액

$I_i$  :  $i$  기업의 과세소득

$t_{ci}$  :  $i$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t_{di}$  :  $i$  기업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sup>89)</sup>

$t_{pi}$  :  $i$  기업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t_{qi}$  :  $i$  기업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주민세 소득세할

그러나 식 (1)은 법인이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남은 법인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상 시행되고 있는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 차감후 소득 중에서 일부가 유보되는 경우와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식 (2)는 식 (1)과 마찬가지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액은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과 배당과정에서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배당과정에서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자자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계산되는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액에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 형태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89) 현행 주민세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인데, 여기서는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로 재계산한 세율을 말한다.

$$T_{ci} = I_i \times (t_{ci} + t_{di}) + I_i \times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t_{pi1} + t_{qi1}) \\ + I_i \times (1 - t_{ci}) \times r_i \times d \times t_{pi1} - I_i \times (1 - t_{ci}) \times r_i \times d \quad (2)$$

여기서  $d$  :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율

$r_i$  :  $i$  기업의 배당률

식 (2)를  $I_i$ 로 나누면 법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되는데,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의 세율과 배당을 하는 경우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의 세율(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고려함)의 합계가 된다.

$$e_{ci} = \frac{T_{ci}}{I_i} = (t_{ci} + t_{di}) +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t_{pi1} + t_{qi1}) \\ + (1 - t_{ci}) \times r_i \times d \times t_{pi1} - (1 - t_{ci}) \times r_i \times d \quad (3)$$

여기서  $e_{ci}$  : 법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를 검토해 보자.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독립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부담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_{pi} = I_i \times (t_{pi2} + t_{qi2}) \quad (4)$$

여기서  $T_{pi}$  :  $i$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액

$t_{p2}$  :  $i$  개인기업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율

$t_{q2}$  :  $i$  개인기업 출자자에 대한 주민세 소득세할<sup>90)</sup>

여기서  $t_{p2}$ 는 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t_{p1}$ 와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다. 식 (4)를  $I_i$ 로 나누면 법인소득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배당되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었을 때의 실효세율은 개인소득세율이 된다.

$$e_{pi} = \frac{T_{pi}}{I_i} = t_{p2} + t_{q2} \quad (5)$$

여기서  $e_{pi}$  :  $i$  개인기업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법인  $i$ 의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기업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의 세부담의 차이가 법인  $i$ 의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이 된다. 즉, 식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과 배당을 하는 경우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90) 현행 주민세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인데, 여기서는 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로 재계산한 세율을 말한다.

$$\begin{aligned}
DT_i &= T_{ci} - T_{pi} \\
&= I_i \times (t_{ci} + t_{di}) + I_i \times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t_{pi1} + t_{qi1}) \\
&\quad + I_i \times (1 - t_{ci}) \times r_i \times d \times t_{pi1} - I_i \times (1 - t_{ci}) \times r_i \times d \\
&\quad - I_i \times (t_{pi2} + t_{qi2}) \tag{6}
\end{aligned}$$

따라서 법인  $i$ 의 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의 차이는 식 (3)에서 식 (5)를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dt_i &= e_{ci} - e_{pi} \\
&= (t_{ci} + t_{di}) + \{1 - (t_{ci} + t_{di})\} \times r_i \times (t_{pi1} + t_{qi1}) \\
&\quad + (1 - t_{ci}) \times r_i \times d \times t_{pi1} - (1 - t_{ci}) \times r_i \times d \\
&\quad - (t_{pi2} + t_{qi2}) \tag{7}
\end{aligned}$$

그런데 식 (6)에서 구한 이중과세액은 기업단위(기업  $i$ )의 이중과세액이므로 기업 전체( $i=1, \dots, n$ )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을 총괄적으로 계산하면 식 (6)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sum_{i=1}^n DT_i = \sum_{i=1}^n [T_{ci} - T_{pi}] \tag{8}$$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은 식 (8)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별로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을 구하여 합계를 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법인기업의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되는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식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소득세율, 개인소득세율, 배당세액공제율, 배당성향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의 크기에 따라 이중과세의 크기가 양(+)의 수가 아닌 음(-)의 수가 될 수도 있다. 즉,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적다면 이중과세의 크기가 음(-)의 수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이중과세가 아닌 과소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계산에 필요한 연도별 법인세율, 소득세율, 배당성향, 배당세액공제율 등은 <표 VII-1>에 요약되어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가정한다.

&lt;표 VII-1&gt; 연도별 법인세율, 소득세율, 배당성향, 배당세액공제율

	법인세 등			소득세 등			배당성향			배당세액 공제율
	법인 세율	주민세 법인세할	합계	소득 세율	주민세 소득세할	합계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1994	0.32	0.024	0.344	0.45	0.03375	0.48375	20.4	17.1	19.4	0.22
1995	0.30	0.025	0.325	0.45	0.03375	0.48375	16.3	19.4	17.0	0.22
1996	0.28	0.028	0.308	0.40	0.04	0.44	31.7	25.4	29.7	0.22
1997	0.28	0.028	0.308	0.40	0.04	0.44	24.4	24.4	24.4	0.19
1998	0.28	0.028	0.308	0.40	0.04	0.44	19.0	21.1	19.7	0.19~0.38
1999	0.28	0.028	0.308	0.40	0.04	0.44	18.4	22.0	19.4	0.19~0.38
2000	0.28	0.028	0.308	0.40	0.04	0.44	18.0	22.4	19.1	0.19
2001	0.28	0.028	0.308	0.40	0.04	0.44	22.6	19.3	21.4	0.19
2002	0.27	0.027	0.297	0.36	0.036	0.396	19.8	16.1	18.5	0.19
2003	0.27	0.027	0.297	0.36	0.036	0.396	21.8	27.2	23.5	0.19

주: 주민세 법인세할과 주민세 소득세할은 1995년까지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의 각각 7.5%가 부과되었으며, 1996년 이후에는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의 각각 10%가 부과되고 있음.

## 나. 분석결과

<표 VII-1>의 수치를 이용하여 식 (7)의  $e_{c^i}$ ,  $e_{p^i}$  및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 차이를 계산한 결과는 <표 V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계산 결과로부터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세부담률의 차이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1)</sup>.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에게 소득세가 또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

과세이며 이로 인해 사업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고 유보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조세제도하에서 배당을 적게 하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총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비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비제조업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제조업의 배당성향과 비제조업의 배당성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식 (7)에서 다른 수치가 동일하다면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세부담도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제조업의 배당성향과 비제조업의 배당성향이 어느 쪽도 상대방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

---

91) 장재식(1976), 이준규(1993), 이준규·이은상(1996)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lt;표 VII-2&gt;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률 차이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e_{ci}$	$e_{pi}$	$dt_i$	$e_{ci}$	$e_{pi}$	$dt_i$	$e_{ci}$	$e_{pi}$	$dt_i$
1994	0.392	0.48375	-0.092	0.384	0.48375	-0.100	0.390	0.48375	-0.094
1995	0.364	0.48375	-0.119	0.372	0.48375	-0.112	0.366	0.48375	-0.118
1996	0.374	0.44000	-0.066	0.361	0.44000	-0.079	0.370	0.44000	-0.070
1997	0.362	0.44000	-0.078	0.362	0.44000	-0.078	0.362	0.44000	-0.078
1998	0.350	0.44000	-0.090	0.355	0.44000	-0.085	0.352	0.44000	-0.088
	0.335		-0.105	0.338		-0.102	0.336		-0.104
1999	0.349	0.44000	-0.091	0.357	0.44000	-0.083	0.351	0.44000	-0.089
	0.334		-0.106	0.339		-0.101	0.335		-0.105
2000	0.348	0.44000	-0.092	0.358	0.44000	-0.082	0.350	0.44000	-0.090
2001	0.358	0.44000	-0.082	0.351	0.44000	-0.089	0.356	0.44000	-0.084
2002	0.335	0.39600	-0.061	0.328	0.39600	-0.068	0.332	0.39600	-0.064
2003	0.338	0.39600	-0.058	0.349	0.39600	-0.047	0.342	0.39600	-0.054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의 세부담률 기준으로 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의 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는 <표 VI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text{이중과세비율} = \frac{e_{ci} - e_{pi}}{e_{pi}} \times 100$$

이중과세의 비율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지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과세 비율은 대체로 -2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와서 이 비율이 상당 폭 감소하였다. 이는 2002년에 법인세 세율과 소득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두 세율의 차이가 상당 폭 축소되었고 특히 2003년의 경우 배당성향이 상당 폭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표 VII-3> 이중과세 비율

(단위: %)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1994	-19.0	-20.6	-19.5
1995	-24.7	-23.1	-24.3
1996	-14.9	-17.9	-15.9
1997	-17.7	-17.7	-17.7
1998	-20.4	-19.3	-20.0
	-23.9	-23.3	-23.7
1999	-20.7	-18.9	-20.2
	-24.1	-23.0	-23.8
2000	-20.9	-18.7	-20.3
2001	-18.6	-20.2	-19.2
2002	-15.5	-17.3	-16.1
2003	-14.6	-12.0	-13.7

이상의 분석에서는 출자자가 1인이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가정함에 따라 기업형태에 따른 세부담률을 비교함에 있어서 누진세율이 무시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으로는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계층별로 각 출자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소득계층이 다른 출자자간에 세부담이 공평한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다음의 두 절에서는 출자자가 다수인 경우를 가정하여 출자자가 받는 배당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고려함

으로써 기업형태에 따른 세부담률을 비교해 볼 뿐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각 출자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계층이 다른 출자자간에 세부담이 공평한지를 검토해 본다.

## 2. 다수 출자자(개인 출자자)의 경우

### 가. 분석모형

출자자는 개인출자자와 법인출자자로 나누어지는데, 이 절에서는 출자자가 모두 개인이라고 가정한다. 먼저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특정 출자자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특정 출자자의 세부담을 분석모형을 통해 비교해 본다. 배당금은 개인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분배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출자자의 소득에 따라 그 적용받는 소득세의 부담액이 다르게 된다. 각 출자자가 배당금의 분배에 대하여 갖는 지분 비율을  $q_j$  라고 하면 출자자  $j$ 의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은 식(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DT_j &= T_{cj} - T_{pj} \\
 &= I \times (t_c + t_d) \times q_j + I \times \{1 - (t_c + t_d)\} \times r \times q_j \times (t_{p1} + t_{a1}) \\
 &\quad + I \times (1 - t_c) \times d \times r \times q_j \times t_{p1} - I \times (1 - t_c) \times d \times r \times q_j \\
 &\quad - I \times q_j \times (t_{p2} + t_{a2})
 \end{aligned} \tag{9}$$

여기서  $DT_j$  :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이중과세액

$T_{cj}$  :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액

- $T_{bj}$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할 경우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액
- $I$  : 법인기업의 과세소득
- $t_c$  : 법인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t_d$  : 법인기업의 과세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 $t_{b1}$  : 법인기업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 $t_{q1}$  : 법인기업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주민세 소득세할
- $t_{b2}$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할 경우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 $t_{q2}$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할 경우  $j$  출자자의 수취배당에 적용되는 주민세 소득세할
- $d$  : 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 공제율
- $r$  : 법인기업의 배당률
- $q_j$  :  $j$  출자자의 지분비율

또한 각 출자자가 부담하는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률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dt_j &= \frac{DT_j}{I} \\
&= e_{cj} - e_{pj} \\
&= (t_c + t_d) \times q_j + \{1 - (t_c + t_d)\} \times r \times q_j \times (t_{p1} + t_{q1}) \\
&\quad + (1 - t_c) \times d \times r \times q_j \times t_{p1} - (1 - t_c) \times d \times r \times q_j \\
&\quad - q_j \times (t_{p2} + t_{q2})
\end{aligned}
\tag{10}$$

여기서  $dt_j$ :  $j$  출자자가 부담하는 이중과세비용

$e_{cj}$ :  $j$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e_{pj}$ :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j$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여기서는 출자자가 다수인 경우 현행 세법 규정에 의한 이중과세 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각 출자자의 세부담을 계산해 보고 동일한 기업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각 출자자의 세부담과 비교함으로써 각 출자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이 다른 출자자간에 세부담이 공평한지를 살펴본다.

동일한 기업을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1) 기업구분: 법인기업
- 2) 법인소득금액: 10억원
- 3)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세율로서 <표 VII-4>와 같다.

- 4)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한다.
- 5) 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출자자별 주식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A: 55%, B: 30%, C: 10%, D: 5%).

<표 VII-4> 법인세율

세목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3% 1,3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5%
주민세 법인할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10%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1) 기업구분: 개인기업
- 2) 소득금액: 10억원
- 3) 소득세율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세율로서 <표 VII-5>와 같다.
- 4)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한다<sup>92)</sup>.
- 5) 출자자별 지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A: 55%, B: 30%, C: 10%, D: 5%).

92)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따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금액이나 비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다른 소득이 없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였다.

&lt;표 VII-5&gt; 소득세율

세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기본공제 <sup>1)</sup>
소득세	1,000만원 이하	8%	-	160만원
	4,000만원 이하	17%	90만원	160만원
	8,000만원 이하	26%	450만원	160만원
	8,000만원 초과	35%	1,170만원	160만원
주민세 소득할	소득세액	소득세액의 10%	-	-

주: 1) 본인공제 10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만을 가정하였음.

## 나. 분석결과

<표 VII-6>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나머지 소득을 전부 출자자에게 배당(100% 배당)한 경우의 각 출자자의 세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VII-7>은 같은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받은 각 출자자의 세부담을 보여준다.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는 <표 VII-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소득의 전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4억 1,626만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3억 3,418만원이었다.

또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A, B, C, D 출자자 모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비율이

55%인 A출자자는 <표 V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 지분비율이 30%인 B출자자는 19.2%, 지분비율이 10%인 C출자자는 50.1%, 그리고 지분비율이 5%인 D출자자의 경우는 111.1%의 비율로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분비율이 낮은 저소득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아지면서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세부담률의 누진성을 볼 수 있다. 다만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C출자자와 D출자자가 15.4%로 같았으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도 C출자자와 D출자자가 37.5%로 같았다.

C출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D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조세의무가 종결되는데도 실효세율이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출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세액공제를 받고 난 결정세액 즉, gross-up 결정세액이 분리과세결정세액보다 작아서 소득세결정세액으로 정해지지 못하고 분리과세결정세액이 소득세결정세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sup>93)</sup>. 이와 같은 소득세결정세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소득이 4천만원

93) <C 출자자의 소득세액 계산 예>

- \* 귀속법인세액 = (수취배당액 - 40,000,000) × 0.15 = (73,820,000 - 40,000,000) × 0.15 = 5,073,000
- \* 배당소득금액 = 수취배당액 + 귀속법인세액 = 73,820,000 + 5,073,000 = 78,893,000
- \* 과세표준 = 배당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78,893,000 - 1,600,000 = 77,293,000
- \* 소득세 산출세액 = 40,000,000 × 0.14 + (77,293,000 - 40,000,000) × 기본세율 = 11,039,810
- \* gross-up 결정세액 = 소득세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 11,039,810 - 5,073,000 = 5,966,810
- \* 분리과세결정세액 = 수취배당액 × 0.14 = 73,820,000 × 0.14 = 10,334,800
- \* 소득세액 결정세액은 gross-up 결정세액과 분리과세결정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함.

이상이 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gross-up 결정세액이 분리과세결정세액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인 출자자라도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는 출자자와 실효세율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127

<표 VII-6> 법인기업 출자자(개인)의 세부담(배당비율 100%)

① 법인소득	1,000,000,000			
② 명목법인세율	25%			
③ 법인세액	238,000,000			
④ 주민세 법인할	23,800,000			
⑤ 법인세 합계	261,800,000			
⑥ 배당가능이익	738,200,000			
⑦ 배당비율	100%			
⑧ 배당금액	738,200,000			
⑨ 지분비율	55%(A)	30%(B)	10%(C)	5%(D)
⑩ 수취배당액	406,010,000	221,460,000	73,820,000	36,910,000
⑪ 귀속법인세액	54,901,500	27,219,000	5,073,000	-
⑫ 배당소득금액	460,911,500	248,679,000	78,893,000	-
⑬ 소득공제액	1,600,000	1,600,000	1,600,000	-
⑭ 과세표준	459,311,500	247,079,000	77,293,000	36,910,000
⑮ 소득세율	14%, 35%	14%, 35%	14%, 17%	14%
⑯ 소득세 산출세액	140,659,025	66,377,650	11,039,810	-
⑰ 배당세액공제액	54,901,500	27,219,000	5,073,000	-
⑱ gross-up 결정세액	85,757,525	39,158,650	5,966,810	-
⑲ 분리과세 결정세액	56,841,400	31,004,400	10,334,800	5,167,400
⑳ 소득세액 결정세액	85,757,525	39,158,650	10,334,800	5,167,400
㉑ 주민세 소득할	8,575,753	3,915,865	1,033,480	516,740
㉒ 소득세 합계	94,333,278	43,074,515	11,368,280	5,684,140
㉓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238,323,278	121,614,515	37,548,280	18,774,140
㉔ 총세부담	416,260,213			
㉕ 실효세율 I <sup>1)</sup>	23.2	19.5	15.4	15.4
㉖ 실효세율 II <sup>2)</sup>	43.3	40.5	37.5	37.5

주: 1) 실효세율 I: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각 출자자의 수취배당액으로 나누어 구함.

2) 실효세율 II: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따른 법인소득으로 나누어 구함.

&lt;표 VII-7&gt; 개인기업 출자자의 세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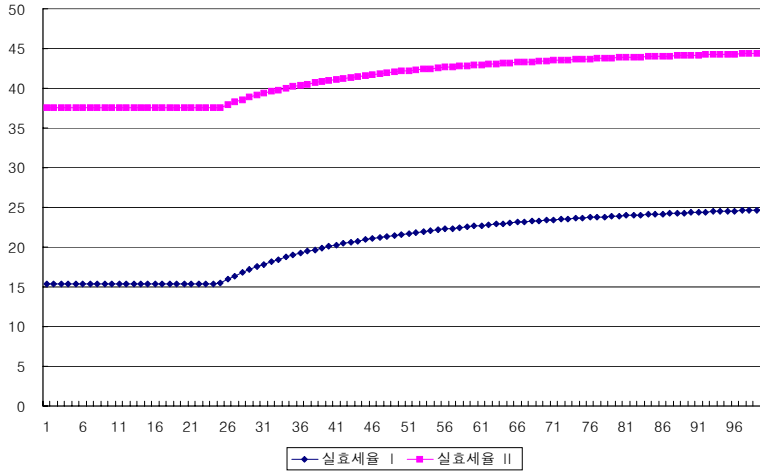
① 소득	1,000,000,000			
② 출자비율	55%(A)	30%(B)	10%(C)	5%(D)
③ 소득금액	550,000,000	300,000,000	100,000,000	50,000,000
④ 소득공제액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⑤ 과세표준	548,400,000	298,400,000	98,400,000	48,400,000
⑥ 소득세율	35%	35%	35%	26%
⑦ 소득세 산출세액	180,240,000	92,740,000	22,740,000	8,084,000
⑧ 주민세 소득할	18,024,000	9,274,000	2,274,000	808,400
⑨ 소득세 합계	198,264,000	102,014,000	25,014,000	8,892,400
⑩ 총세부담	334,184,400			
⑪ 실효세율 <sup>1)</sup>	36.0	34.0	25.0	17.8

주: 1) 실효세율: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각 출자자의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구함.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II-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지분비율 24%까지는 15.4%로 동일하고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도 지분비율 24%까지는 37.5%로 동일하다.

[그림 VII-1]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100%)

(단위: %)



<표 VII-8>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나머지 소득 중 21%를 출자자에게 배당한 경우의 각 출자자의 세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한 것은 제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평균이 20.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VII-7>에 나와 있는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각 출자자의 세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각 출자자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는 <표 VII-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하면 배당비율을 100%로 가정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2억 8,567만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3억 3,418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한 번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이 출자자에게 배당된 후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이며 이로 인해 사업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가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유보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배당을 적게 하고 사내유보를 많이 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 오히려 총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과세의 비율은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높아지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분비율이 55%인 A출자자는 <표 V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8%, 지분비율이 30%인 B출자자는 -16.0%, 지분비율이 10%인 C출자자는 14.2%, 그리고 지분비율이 5%인 D출자자의 경우는 60.2%의 비율로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출자자나 저소득 출자자나 실효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받는 C출자자나 D출자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인 A출자자나 B출자자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뿐만 아니라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쳐서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도 동일하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세결정세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 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어도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gross-up 결정세액이 분리과세결정세액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인 출자자라도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는 출자자와 실효세율이 같아지게 된다. A출자자와 B출자자는 모두 gross-up 결정세액이 분리과세결정세액보다 작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C출자자나 D출자자와 동일한 실효세율이 나타나는 것이다.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131

<표 VII-8> 법인기업 출자자(개인)의 세부담(배당비율 21%)

① 법인소득	1,000,000,000			
② 명목법인세율	25%			
③ 법인세액	238,000,000			
④ 주민세 법인할	23,800,000			
⑤ 법인세 합계	261,800,000			
⑥ 배당가능이익	738,200,000			
⑦ 배당비율	21%			
⑧ 배당금액	155,022,000			
⑨ 지분비율	55%(A)	30%(B)	10%(C)	5%(D)
⑩ 수취배당액	85,262,100	46,506,600	15,502,200	7,751,100
⑪ 귀속법인세액	6,789,315	975,900	-	-
⑫ 배당소득금액	92,051,415	47,482,590	-	-
⑬ 소득공제액	1,600,000	1,600,000	-	-
⑭ 과세표준	90,451,415	45,882,590	15,502,200	7,751,100
⑮ 소득세율	14%, 26%	14%, 8%	14%	14%
⑯ 소득세 산출세액	14,217,368	6,070,607	-	-
⑰ 배당세액공제액	6,789,315	975,990	-	-
⑱ gross-up 결정세액	7,428,053	5,094,617	-	-
⑲ 분리과세 결정세액	11,936,694	6,510,924	2,170,308	1,085,154
⑳ 소득세액 결정세액	11,936,694	6,510,924	2,170,308	1,085,154
㉑ 주민세 소득할	1,193,669	651,092	217,031	108,515
㉒ 소득세 합계	13,130,363	7,162,016	2,387,339	1,193,669
㉓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157,120,363	85,702,016	28,567,339	14,283,669
㉔ 총세부담	285,673,387			
㉕ 실효세율 I <sup>1)</sup>	15.4	15.4	15.4	15.4
㉖ 실효세율 II <sup>2)</sup>	28.6	28.6	28.6	28.6

주: 1) 실효세율 I: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각 출자자의 수취배당액으로 나누어 구함.

2) 실효세율 II: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따른 법인소득으로 나누어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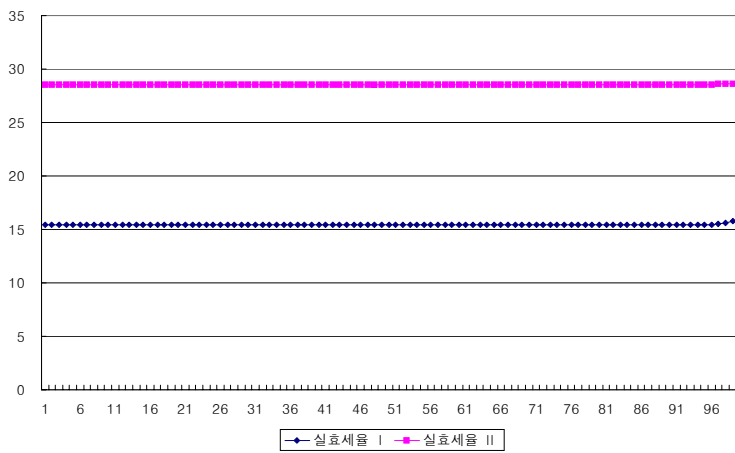
&lt;표 VII-9&gt; 법인기업 출자자(개인)의 이중과세 비율

	100%(지분비율)		21%(지분비율)	
	이중과세금액	이중과세비율	이중과세금액	이중과세비율
A	40,059,278	20.2	-14,143,637	-20.8
B	19,600,515	19.2	-16,311,984	-16.0
C	12,534,280	50.1	3,553,339	14.2
D	9,881,740	111.1	5,391,269	60.2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VII-2]에  
서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이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출자자단계에  
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지분비율 96%까지는 15.4%로 동일하고 지분  
비율이 96%를 초과하면 조금씩 높아져서 지분비율이 100%일 때 15.9%  
를 기록하였다.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  
은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28.6%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VII-2]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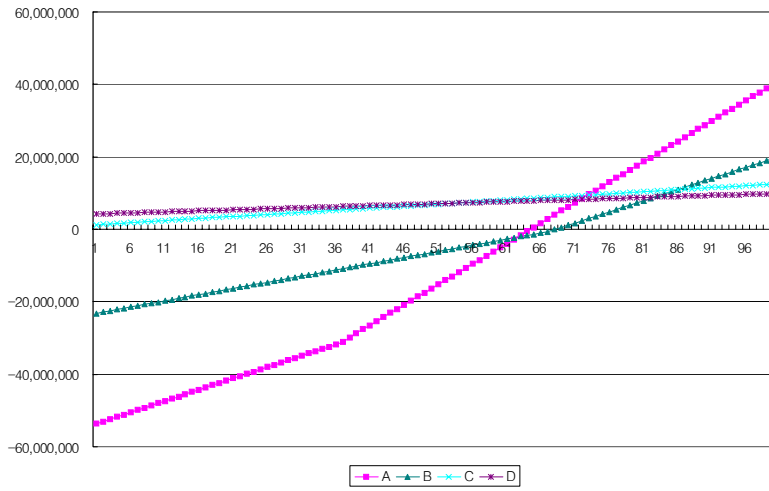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는 배당비율이 100%와 21%의 두 경우만 가정하여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배당비율에 따라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그림 VII-3]과 [그림 VII-4]에서는 법인의 소득이 10 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변할 때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A, B, C, D 출자자의 이중과세 금액의 합계는 배당비율이 55%가 될 때까지는 음(-)이므로 과소과세가 되고 배당비율이 55%를 초과하여야 이중과세가 되기 시작한다. 즉, 배당비율이 55%를 초과하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큰 반면, 배당비율이 55% 이하이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작다.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증가하는 동안 저소득 출자자인 D의 이중과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 출자자인 C의 이중과세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배당비율이 어떻게 되든 이중과세의 비율은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높아지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 출자자인 A와 B는 배당비율이 각각 64%와 68%를 초과하여야 이중과세되고 배당비율이 그 이하일 때는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출자자 C와 출자자 D는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증가할 때까지 이중과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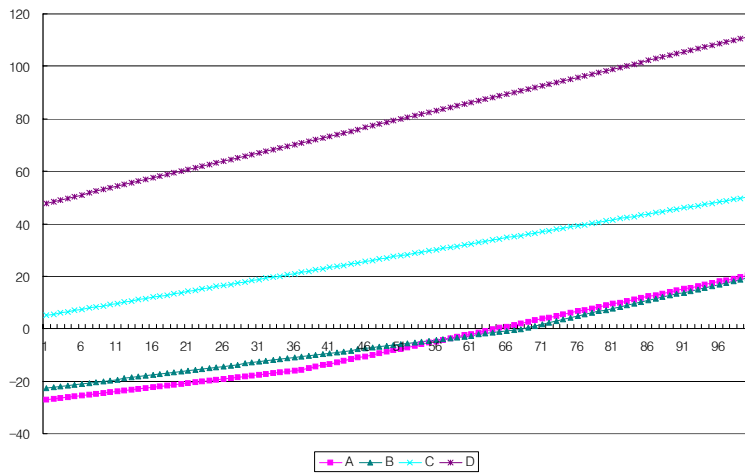
[그림 VII-3]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소득10억)

(단위: 원)



[그림 VII-4]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소득10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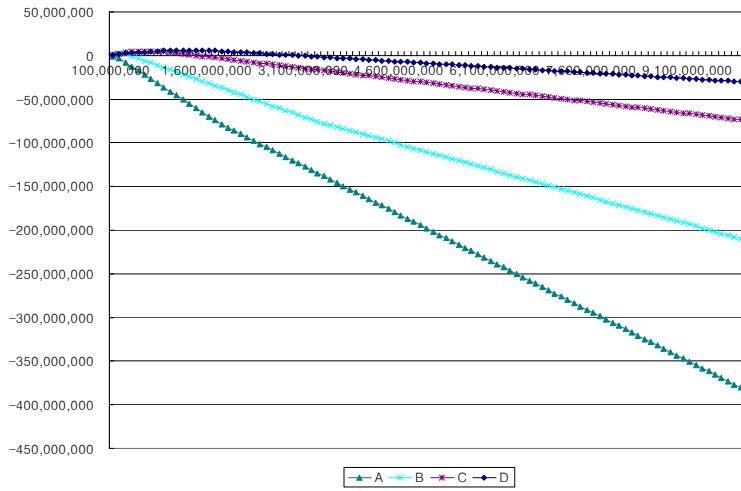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VII-5]와 [그림 VII-6]에서는 배당비율이 21%로 고정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1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변할 때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배당비율이 21%인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2억원까지는 이중과세가 되었으나, 소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서부터 과소과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금액이 2억원일 때까지는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지만, 소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그 반대가 된다.

소득금액이 1억원부터 29억원까지 증가하는 동안 저소득 출자자인 D출자자의 이중과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9억원을 초과하여 100억원까지 증가하는 동안 A, B, C, D 출자자가 모두 과소과세되었고 D출자자가 가장 적게 과소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출자자인 A출자자의 경우는 전 구간에서 과소과세되었으며, B출자자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C출자자는 법인의 소득이 14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D출자자는 법인의 소득이 2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과소과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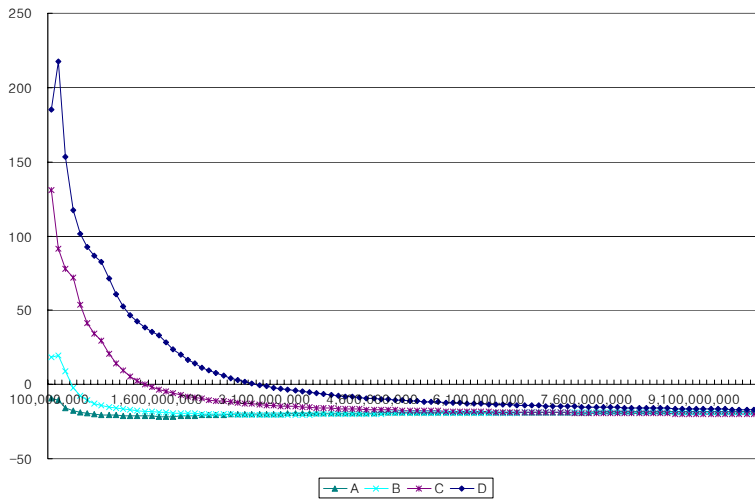
[그림 VII-5]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배당비율 21%)

(단위: 원)



[그림 VII-6]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배당비율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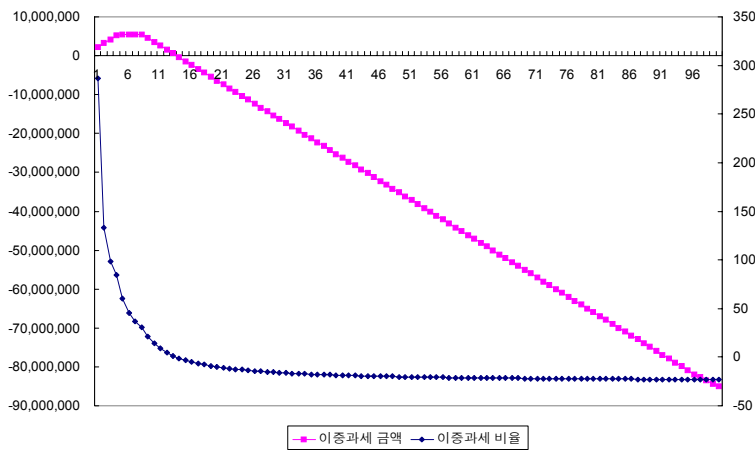
(단위: %)



마지막으로 [그림 VII-7]에서는 배당비율이 21%로 소득금액은 1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지분비율이 1%에서 100%까지 변할 때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분비율이 13%가 될 때까지는 이중과세가 되는데, 지분비율이 낮을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자지분이 13%를 초과하면 과소과세가 되고 있으며 출자지분이 48% 정도가 되고서 출자지분이 100%가 될 때까지 이중과세의 비율은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VII-7]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및 비율  
(법인소득: 10억원, 배당비율: 21%)

(단위: 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개인인 경우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즉,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유리하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기인한다.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분비율이 낮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출자자는 원천징수를 받아야 하나 지분비율이 높아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인 출자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득금액이 낮은 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서 오히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반면 소득금액이 높은 출자자의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소득세제의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데, 출자자가 출자자단계 또는 법인단계 및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의 실효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 누진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받는 경우보다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ross-up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결정세액 중에서 큰 쪽을 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gross-up 결정세액은 배당세액공제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 분리과세 결정세액보다 낮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 3. 다수 출자자(법인 출자자)의 경우

#### 가. 분석모형

제2절에서는 출자자가 개인이라는 가정하에 출자자가 총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런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먼저 피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다시 배당과정에서 투자회사에 분배된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원천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의 경우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의해 배당금을 일정부분 피투자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본절에서도 제2절 및 제3절과 마찬가지로 법인원천소득이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법인기업 소득에 대한 세부담과 개인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해 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출자자가 모두 법인이라고 가정하고 개개 법인출자자가 배당금의 분배에 대하여 갖는 지분 비율을  $q_j$ 라고 한다. 먼저 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액 중에서  $j$ 법인의 몫은 피투자회사 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 중  $j$ 법인의 몫과 다시 배당과정에서  $j$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의 합계액으로서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_{cj} = I \times (t_{ci} + t_{di}) \times q_j + [ [I \times \{1(t_{ci} + t_{di})\} \times r \times q_j ] - E_j ] \times (t_{cj} + t_{dj}) \quad (11)$$

여기서  $t_{ci}$  : 피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t_{di}$  : 피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t_{cj}$  :  $j$  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t_{di}$  :  $j$  투자회사의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할  
 $E_j$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의한  $j$ 기업(투자회  
 사)의 익금불산입액

$E_j$ 는 다음의 값을 갖는다.

<표 VII-10> 지분비율에 따른  $E_j$  값

기업(투자회사)		$q_j$	$E_j$
일반 법인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q_j > 0.3$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5$
		$q_j \leq 0.3$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3$
	비상장 법인	$q_j = 1^{1)}$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0.5 < q_j < 1$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5$
		$q_j \leq 0.5$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3$
지주 회사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q_j > 0.4$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9$
		$0.3 \leq q_j \leq 0.4$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6$
	비상장 법인	$q_j = 1$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0.8 < q_j < 1$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9$
		$0.5 \leq q_j \leq 0.8$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times 0.6$

주: 2004년말 세법개정에서 일반법인의 경우도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비  
 율이 100%인 경우 배당금액의 10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였음.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경우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부담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_{pj} = I \times (t_{pj2} + t_{qj2}) \tag{12}$$

여기서  $t_{q2}$  : 주민세 소득할

각 출자자의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액은 식 (11)에서 식 (12)를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DT_j &= T_{cj} - T_{pj} \\
 &= I \times (t_{ci} + t_{di}) \times q_j + [I \times \{1 - (t_{ci} + t_{di})\} \times r \times q_j] \\
 &\quad - E_j \times (t_{cj} + t_{dj}) - I \times (t_{p2} + t_{q2})
 \end{aligned} \tag{13}$$

여기서는 출자자가 다수인 경우 현행 세법 규정에 의한 이중과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하에서 과표에 따라 각 법인출자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과표가 다른 출자자간에 세부담이 공평한지를 살펴본다.

<법인기업으로 운용되는 경우>

- 1) 기업구분: 법인기업(상장법인, 개인법인)
- 2) 법인소득금액: 10억원
- 3)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세율로서 <표 VII-4>와 같다.
- 4)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한다.
- 5) 법인의 총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출자자별 주식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A: 55%, B: 30%, C: 10%, D: 5%).

<개인기업으로 운용되는 경우>

- 1) 기업구분: 개인기업
- 2) 소득금액: 10억원
- 3) 소득세율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세율로서 <표 VII-5>와 같다.
- 4) 각 출자자의 소득으로는 배당소득만 있는 것으로 한다.

- 5) 출자자별 지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A: 55%, B: 30%, C: 10%, D: 5%).

#### 나. 분석결과

<표 VII-11>은 피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나머지 소득을 전부(100%) 출자자(투자회사)에 배당한 경우의 각 출자자의 세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표 VII-7>)의 세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는 <표 VII-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소득의 전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3억 4,494만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3억 3,418만원이었다.

또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익금불산입제도에도 불구하고 A출자자를 제외하고 B, C, D 출자자 모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4)</sup>. 이중과세의 비율은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분비율이 55%인 A출자자는 -5.9%, 지분비율이 30%인 B출자자는 5.8%, 지분비율이 10%인 C출자자는 34.2%, 그리고 지분비율이 5%인 D출자자의 경우는 88.8%의 비율로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 본 분석에서 예를 든 A, B, C, D의 지분비율에 따르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동일하다. 그러나 지분비율 30% 초과부터 지분비율 50%까지의 출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표 VII-11> 법인기업 출자자(법인)의 세부담(배당비율 100%)

① 법인소득	1,000,000,000			
② 명목법인세율	25%			
③ 법인세액	238,000,000			
④ 주민세 법인할	23,800,000			
⑤ 법인세 합계	261,800,000			
⑥ 배당가능이익	738,200,000			
⑦ 배당비율	100%			
⑧ 배당금액	738,200,000			
⑨ 지분비율	55%(A)	30%(B)	10%(C)	5%(D)
⑩ 수취배당액	406,010,000	221,460,000	73,820,000	36,910,000
⑪ 익금불산입액	203,005,000	66,438,000	22,146,000	11,073,000
⑫ 과세표준	203,005,000	155,022,000	51,674,000	25,837,000
⑬ 법인세율	25%	25%	13%	13%
⑭ 법인세액	38,751,250	26,755,500	6,717,620	3,358,810
⑮ 주민세 법인할	3,875,125	2,675,550	671,762	335,881
⑯ 법인세 합계	42,626,375	29,431,050	7,389,382	3,694,691
⑰ 법인세 총계 <sup>1)</sup>	186,616,375	107,971,050	33,569,382	16,784,691
⑱ 총세부담	344,941,498			
⑲ 실효세율 I <sup>2)</sup>	10.5	13.3	10.0	10.0
⑳ 실효세율 II <sup>3)</sup>	33.9	36.0	33.6	33.6

주: 1) 법인세 총계는 ⑤×⑨+⑰

2) 실효세율 I: 출자자(투자회사)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각 출자자의 수취배당액으로 나누어 구함.

3) 실효세율 II: 법인(피투자회사)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따른 법인소득으로 나누어 구함.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B출자자가 13.3%로 가장 높았으며, A 출자자는 10.5%였으며, C, D 출자자는

10.0%였다. 또한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지분비율이 30%인 B출자자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A출자자가 33.9%, C, D 출자자가 33.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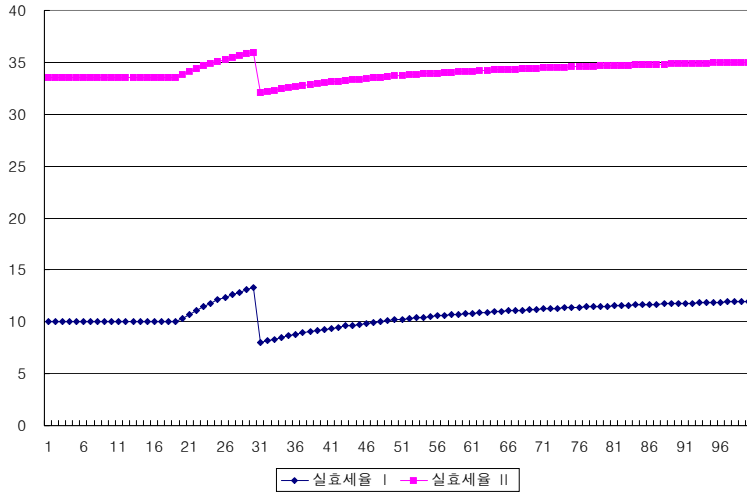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의 변화는 [그림 VII-8]과 [그림 VII-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VII-8]은 상장회사의 출자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지분비율 19%까지는 10.0%로 동일하나 지분비율 19%를 초과하면 증가하기 시작하여 30%가 되면 13.3%가 된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31%가 되면 8.0%로 낮아져서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세부담률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은 지분비율 19%까지는 33.6%로 동일하나 지분비율 19%를 초과하면 증가하기 시작하여 30%가 되면 36.0%가 된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31%가 되면 32.1%로 낮아져서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VII-9]는 비상장회사의 출자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지분비율 19%까지는 10.0%로 동일하나 지분비율 19%를 초과하면 증가하기 시작하여 50%가 되면 15.7%가 된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51%가 되면 10.2%로 낮아져서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분비율이 100%가 되면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은 지분비율 19%까지는 33.6%로 동일하나 지분비율 19%를 초과하면 증가하기 시작하여 50%가 되면 37.8%가 된다. 그러나 지분비율이 51%가 되면 33.7%로 낮아져서 지분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분비율이 100%가 되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은 26.2%로 급락한다.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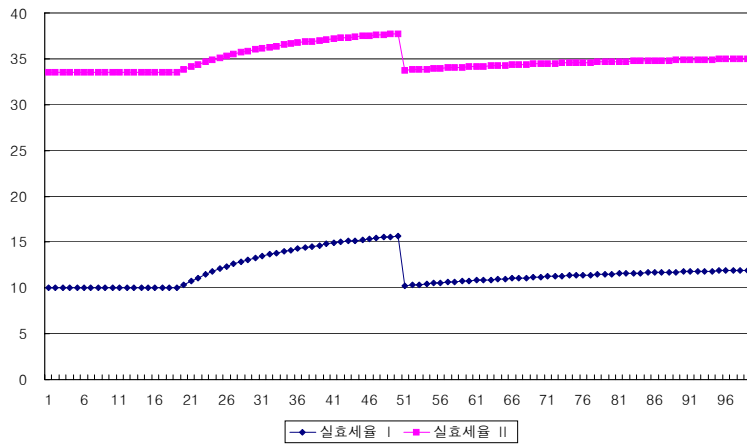
[그림 VII-8] 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100%)

(단위: %)



[그림 VII-9]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100%)

(단위: %)



<표 VII-12>는 피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 후 나머지 소득 중 21%를 투자회사에 배당한 경우의 각 출자자(투자회사)의 세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제2절과 마찬가지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배당기업의 배당성향 평균이 20.6%임을 고려하여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하였다.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표 VII-7>)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어느 정도 이중과세되고 있는지를 계산한 결과는 <표 VII-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배당비율을 21%로 가정하면 배당비율이 100%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피투자회사)단계와 출자자(투자회사)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2억 7,488만원이었으며, 개인기업의 출자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액은 3억 3,418만원이었다. 이중과세의 비율은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높아지는 문제는 여전히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비율이 21%인 경우는 배당비율이 100%인 경우에 비해 전체적으로 이중과세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지분비율이 55%인 A 출자자와 30%인 B 출자자는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분비율이 55%인 A 출자자는 -24.3%, 지분비율이 30%인 B 출자자는 -18.4%, 지분비율이 10%인 C 출자자는 10.9%, 그리고 지분비율이 5%인 D 출자자의 경우는 55.9%의 비율로 이중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12> 법인기업 출자자(법인)의 세부담(배당비율 21%)

① 법인소득	1,000,000,000			
② 명목법인세율	25%			
③ 법인세액	238,000,000			
④ 주민세 법인할	23,800,000			
⑤ 법인세 합계	261,800,000			
⑥ 배당가능이익	738,200,000			
⑦ 배당비율	21%			
⑧ 배당금액	155,022,000			
⑨ 지분비율	55%(A)	30%(B)	10%(C)	5%(D)
⑩ 수취배당액	85,262,100	46,506,600	15,502,200	7,751,100
⑪ 이금불산입액	42,631,050	13,951,980	4,650,660	2,325,330
⑫ 과세표준	42,631,050	32,554,620	10,851,540	5,425,770
⑬ 법인세율	13%	13%	13%	13%
⑭ 법인세액	5,542,037	4,232,101	1,410,700	705,350
⑮ 주민세 법인할	554,204	423,210	141,070	70,535
⑯ 법인세 합계	6,096,240	4,655,311	1,551,770	775,885
⑰ 법인세 총계	150,086,240	83,195,311	27,731,770	13,865,885
⑱ 총세부담	274,879,206			
⑲ 실효세율 I <sup>1)</sup>	7.1	10.0	10.0	10.0
⑳ 실효세율 II <sup>2)</sup>	27.3	27.7	27.7	27.7

주: 1) 실효세율 I: 출자자(투자회사)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각 출자자의 수취배당액으로 나누어 구함.

2) 실효세율 II: 법인(피투자회사)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각 출자자의 세부담액을 지분비율에 따른 법인소득으로 나누어 구함.

&lt;표 VII-13&gt; 법인기업 출자자(법인)의 이중과세 비율

	100%(지분비율)		21%(지분비율)	
	이중과세금액	이중과세비율	이중과세금액	이중과세비율
A	-11,647,625	-5.9	-48,177,760	-24.3
B	5,957,050	5.8	-18,818,689	-18.4
C	8,555,382	34.2	2,717,770	10.9
D	7,892,291	88.8	4,973,485	55.9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A출자자가 7.1%로 가장 낮았으며, B, C, D 출자자의 실효세율은 10.0%였다. 또한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A출자자가 27.3%로 가장 낮았으며, B, C, D 출자자가 27.7%였다.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을 [그림 VII-10]과 [그림 VII-11]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VII-10]은 상장회사의 출자자지분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지분비율 30%까지 10.0%로 동일하였고 지분비율이 30%를 초과하면서부터 100%가 될 때까지 7.2%로 나타나 약간의 세부담률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은 지분비율 30%까지는 27.7%로 동일하였으며 지분비율 30%를 초과하면서부터 100%가 될 때까지 27.3%로 조금 낮아져서 약간의 세부담률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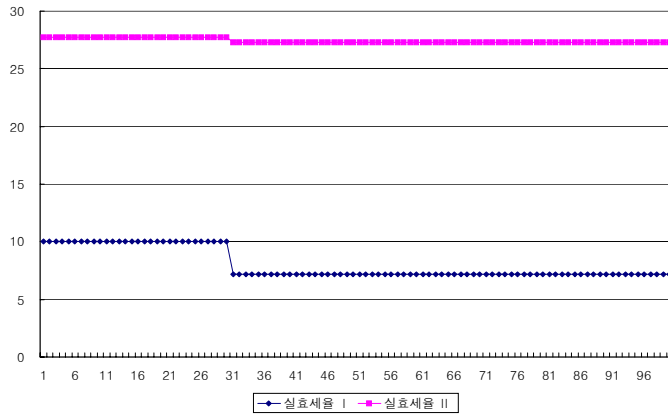
[그림 VII-11]은 비상장회사의 출자자지분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실효세율(실효세율 I)은 지분비율 50%까지 10.0%로 동일하였고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면서부터 99%가 될 때까지 7.2%로 나타났고 지분비율이 100%일 때는 영(0)으로 나타나 약간의 세부담률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친 실효세율(실효세율 II)은 지분비율 50%까지는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149

27.7%로 동일하였으며 지분비율 50%를 초과하면서부터 99%가 될 때까지 27.3%로 나타났고 지분비율이 100%일 때는 26.2%로 낮아져서 약간의 세부담률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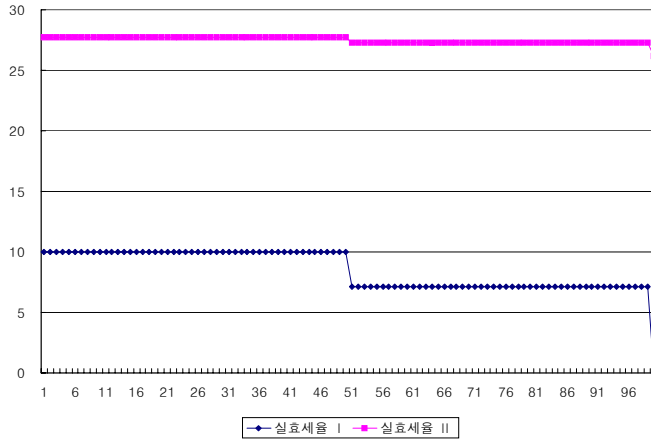
[그림 VII-10] 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21%)

(단위: %)



[그림 VII-11]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10억, 21%)

(단위: %)



이상의 논의에서는 배당비율이 100%와 21%의 두 가지 경우만 가정하여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만으로는 배당비율에 따라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그림 VII-12]와 [그림 VII-13]에서 법인의 소득은 1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변할 때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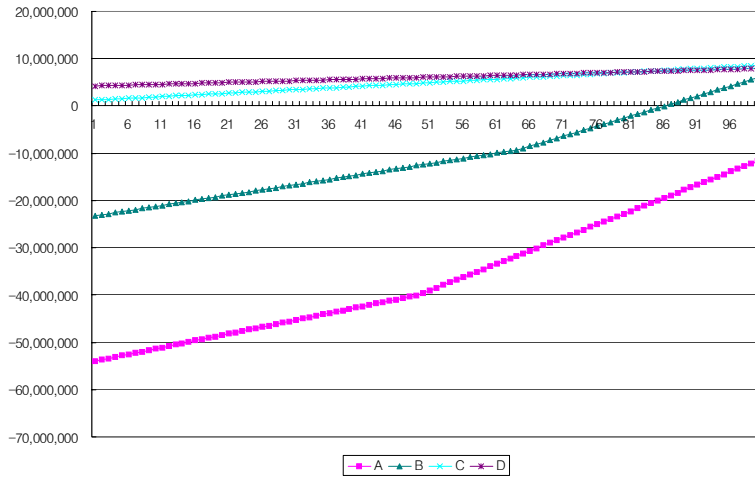
A, B, C, D 출자자의 이중과세 합계액은 배당비율이 90%가 될 때까지 음(-)으로서 과소과세가 되고 있다. 즉, 배당비율이 90%가 될 때까지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작다. 그러나 배당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즉, 배당비율이 90%를 초과하면 법인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더 크게 된다.

A, B, C, D 출자자 모두 배당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출자자는 배당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전 구간에서 이중과세되지 않고 있다. B출자자는 배당비율이 86%를 초과하면 이중과세가 되고 배당비율이 86% 미만일 때는 과소과세되고 있다. C출자자와 D출자자는 배당비율이 1%에서 100%로 증가할 때까지 전 구간 동안 이중과세되고 있으며 배당비율이 커질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VII.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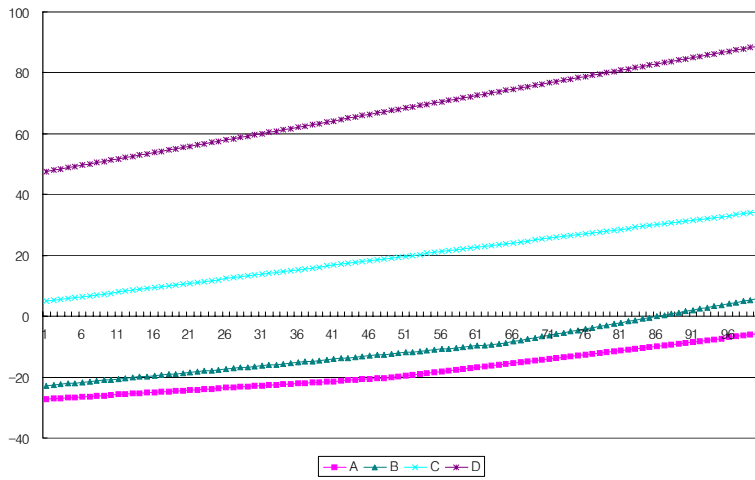
[그림 VII-12]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소득10억)

(단위: 원)



[그림 VII-13] 배당비율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소득10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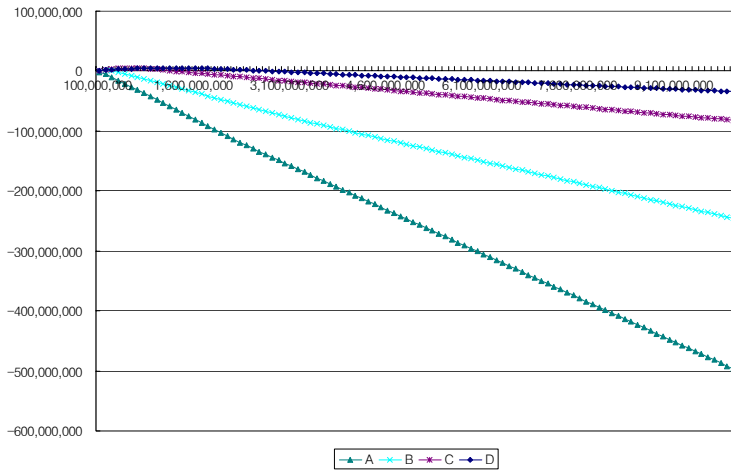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그림 VII-14]와 [그림 VII-15]에서는 배당비율이 21%로 고정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1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변할 때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법인의 소득금액이 1억원부터 전 구간 동안 과소과세가 되고 있다. 즉,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더 작은 것이다. 소득금액이 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저소득 출자자인 D의 이중과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D출자자의 경우 법인의 소득이 2억원일 때 205.2%의 가장 높은 이중과세 비율을 보였으며, C출자자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1억원일 때 117.8%의 가장 높은 이중과세 비율을 보였다. 또한 A출자자의 경우는 전 구간 동안 과소과세되었으며, B출자자의 경우는 법인의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C출자자는 법인의 소득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D출자자는 법인의 소득이 27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과소과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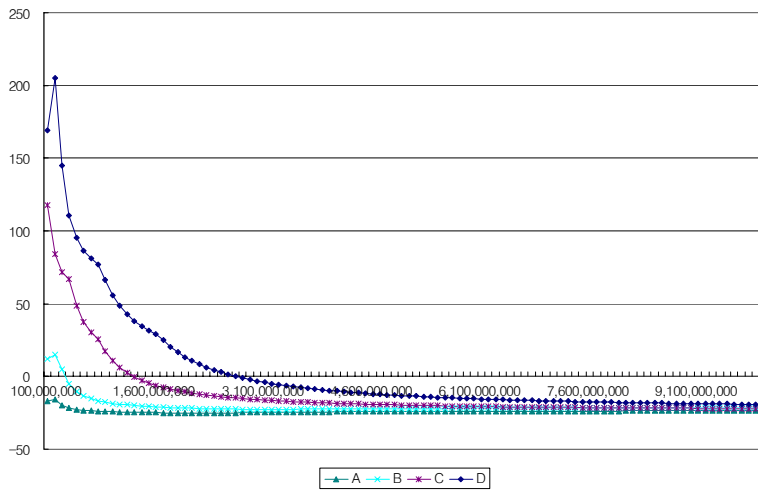
[그림 VII-14]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배당비율 21%)

(단위: 원)



[그림 VII-15]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비율(배당비율 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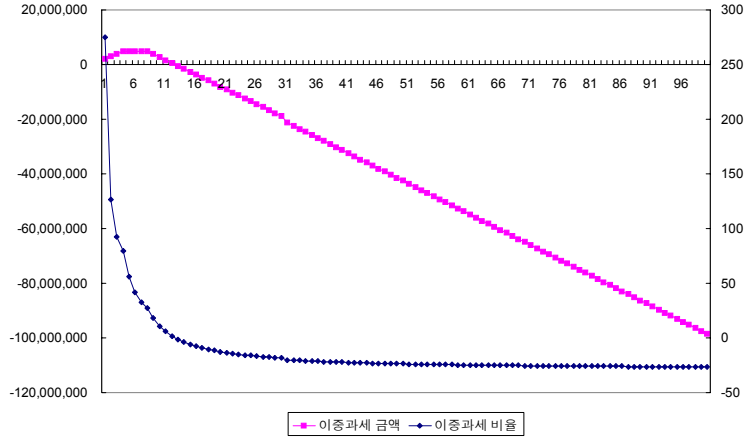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VII-16]과 [그림 VII-17]에서는 배당비율이 21%, 소득금액은 1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지분비율이 1%에서 100%까지 변할 때 이중과세금액과 이중과세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VII-16]과 [그림 VII-17]은 각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경우인데, 두 경우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출자지분이 12%가 될 때까지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이중과세가 되며 출자지분이 낮을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자지분이 12%를 초과하면서부터 과소과세가 되고 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이중과세 금액과 이중과세 비율은 배당비율 30% 초과부터 50%까지의 구간 동안 서로 달라진다. 이와 같은 이유는 <표 V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비율 30% 초과부터 50%까지의 구간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의 5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의 3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비율이 100%가 되면 이중과세 비율이 -29.5%로 떨어진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비율 99%까지는 수입배당금의 5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으나 지분비율이 100%가 되면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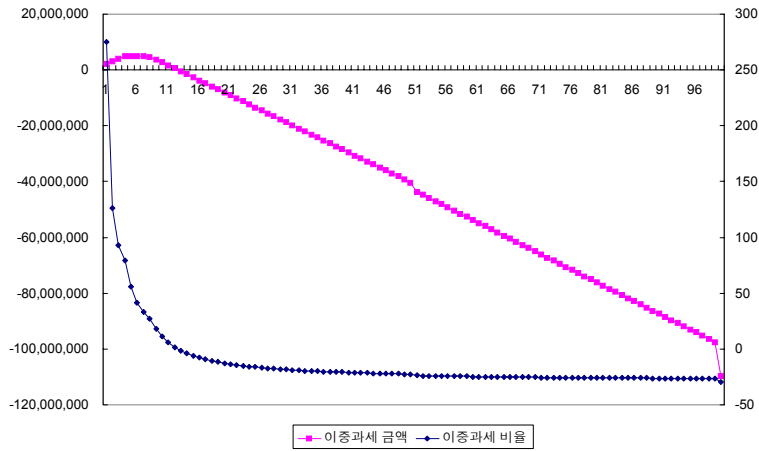
[그림 VII-16] 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및 비율(법인소득: 10억원, 배당비율: 21%)

(단위: 원, %)



[그림 VII-17]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의 변화에 따른 이중과세 금액 및 비율(법인소득: 10억원, 배당비율: 21%)

(단위: 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법인인 경우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즉,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유리하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분이 낮은 출자자도 과소과세된다. 셋째,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법인세는 두 단계의 세율이어서 네 단계의 소득세 처럼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과 달리 배당금액만으로 고소득계층인지 저소득계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배당소득만을 고려하더라도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 VIII.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 1.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 가. 이중과세조정의 미흡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법인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현재에는 법인세 저세율인 15%를 기준으로 계산한 19%의 gross-up 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2005년부터 법인세율 저세율이 13%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15%의 gross-up 비율이 사용될 예정이다.

$$\text{gross-up율} = \frac{0.13}{1-0.13} = \frac{15}{100}$$

이와 같이 저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법인세율 고세율이 25%로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gross-up 비율을 계산하면 0.33이 된다.

$$\text{gross-up율} = \frac{0.25}{1-0.25} = \frac{33}{100}$$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전부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33%의 gross-up 비율이 사용되어야 하나, 15%의 gross-up 비율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15/33 정도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sup>95)</sup>.

#### 나. 수직적 공평성의 미흡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조세부과의 원칙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이 원칙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조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똑같은 효용수준을 누리던 사람들이라면 납부하고 난 후에도 똑같은 효용수준을 누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sup>96)</sup>. 소득세제의 누진세율은 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Ⅶ장의 분석에서 배당소득과세제도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함께 운용됨으로써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소득세율이 누진적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가 누진적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는 현행 임팩테이션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에 의해서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의해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

95) 이는 법인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만일 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우에 따라 이중과세의 조정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제2절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96) 이준구(1995), pp. 338~341.

용소득이 기준금액인 4,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고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는 소득세의 세율에 비해 누진적이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어서 배당세액 공제를 받고 난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아서 세부담률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gross-up결정세액이 분리과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분리과세 결정세액이 소득세 결정세액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sup>97)</sup> 분리과세 결정세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률이 누진적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법인기업으로 운영할 때 출자자가 법인일 때 상장법인의 경우 출자자단계에서 지분비율 31%에서 100%까지의 구간 동안,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지분비율 51%에서 100%까지의 구간 동안 세부담률의 역진성이 나타났다.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를 합치면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비율이 31%부터 100%까지의 구간 동안,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지분비율 51%부터 100%까지의 구간 동안 세부담률의 역진성이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두 단계의 세율이므로 누진적인 세율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세부담률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음은 사실이다. 더구나 제Ⅷ장의 분석에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때의 세부담이 출자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를 불문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때의 세부담에 비해 저소득 출자자일수록 불리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이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은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배당소득과세제도하에서는 소득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7) 예를 들면 법인소득이 10억원이고 배당비율이 21%인 경우 출자비율이 96%인 출자자까지 동일한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다.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익금불산입 비율의 차별적 조정

제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받는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수입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 V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60%, 90%, 100%에 상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피투자회사로부터 받는 투자회사의 수입배당금의 30%, 50%, 100%<sup>98)</sup>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법인주주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표 VIII-1>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비율

출자대상 법인	지주회사		일반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40% 초과	90%	30% 초과	50%
	30~40% 이하	6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100%	100%	100%	100%
	80% 초과	90%	50% 초과	50%
	50~80% 이하	60%	50% 이하	30%

주: 1) 지분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98) 2004년말 세법개정에서 일반법인의 경우도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의 10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였다.

일반 법인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해 익금불산입 비율을 더 많이 허용하는 이유는 지주회사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가 미흡한 이유를 과세문제뿐만 아니라 국한하더라도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자회사와 모회사를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간주하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주회사에게는 필수적인 과세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더 높여줌으로써 일반법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 익금불산입 비율의 차별적인 조정은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초기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라.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 조세의 비중립성

제VIII장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기업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한 번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이 출자자에게 배당된 후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이며 이로 인해 사업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퓨테이션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낮고 유보소득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는 현행 조세제도하에서 배당을 적게 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총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유한책임과 지분분산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인 반면,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해 기업가적 정신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다. 기업가가 사업의 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라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조세가 비중립적이라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sup>99)</sup>.

우리나라의 현행 배당소득세제는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마. 배당소득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제Ⅷ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획득한 순이익을 기업의 출자자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미래성장을 위한 사내유보금으로 나누는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차감후 소득이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반면 유보된 소득은 법인세만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기 때문에 사내유보를 선호하도록 하고 있

99) 이준규(1996), p. 622.

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할 때 유보된 금액만큼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절히 과세한다면 배당과 사내유보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 V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상장 및 등록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대주주를 제외한 출자자들에게는 완벽하게 과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유보하는 것이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표 VIII-2> 주식양도차익 과세

구 분		세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등록 주식으로서 대주주 양도 또는 장외양도분</li> <li>○ 비상장·비등록주식</li> </ul>	① 비중소기업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② 중소기업의 주식	10%
	①, ② 외의 주식	20%

세법에서 이익의 유보에 대해 배당보다 상대적으로 세제상 우대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익의 유보에 대해 세제상 상대적 우대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기업의 자본축적을 유보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 주식보유를 목적으로 현금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증시 접근을 유도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 배당소득과 차입금 지급이자간 조세의 비중립성

법인은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이용할 것인가 또는 타인자본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배당소득과 차입금 지급이자간 조세의 비중립성이 존재한다면 기업의 자금조달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차입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법인단계에서 타인자본 사용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반면, 기업이 자기자본을 사용하는 경우 출자자단계에서 배당에 대해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법인단계에서 배당지급액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제28조에서는 과도한 국내외 차입을 직접 규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sup>100)</sup>. 즉 기업이 비생산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때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자본의 조달비용을 상승시켜 타인자본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사유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비업무용 부동산취득·보유에 관련된

10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손금불산입사유에 해당하는 금액(한도는 총차입금)}}{\text{총차입금}}$$

총차입금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보유에 관련한 지급이자,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관련한 이자 등이다<sup>101)</sup>.

이와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의해 지급이자의 무제한적인 손금불산입을 방지하고 있지만 한도 내에서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신규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법인기업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은 타인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유효세율보다 높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당연히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되는 자본조달결정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과도하게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도산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 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기본방향

배당소득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앞 절에서 이중과세 조정의 미흡, 수직적 공평성의 미흡,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익금불산입 비율의 차별적 조정,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 조세의 비중립성, 배당소득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배당소득과 차입금 지급이자간 조세의 비중립성 등을 논의하였다.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법인의 출자자는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때 출자자가 분배받은 배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

101) 2004년 말 세법개정에서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 이상인 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폐지되었다.

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제는 gross-up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저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완전히 공제해 주지만,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15/33 정도만을 조정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기업의 출자자는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부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많다면 이중과세되는 것이고,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적다면 과소과세되는 것이고,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제Ⅶ장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소득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는 이중과세 때문에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많다. 그러나 법인이 현재 우리나라의 배당성향인 21% 정도를 배당한다면 이중과세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적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배당에 대해서 출자자단계에서 또 다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당연히 배당소득공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인 의미의 이중과세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을 비교해 볼 때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즉,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적다면 형식적으로 이중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과소과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차이가 나고 사내유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제도하에서 법인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는 그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다는 문제는 사내유보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배당소득세제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으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통합하는 방안일 것이다. 법인세를 폐지하여 법인단계에서 세부담을 하지 않고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담한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법인세 폐지의 타당성은 나름대로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법인에 대한 과세의 방향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법인본질론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법인실제설과 법인의제설의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법인실제설에 따르면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상이한 두 개의 조세주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세를 한 번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되어 그들의 소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단계에서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단계에서 선납

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법인세 폐지론자들은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서 법인과 그의 구성원인 주주를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는 것은 법적 사고상의 편의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을 통해 가득된 소득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가에 관한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인세의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투자여력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의 불요불급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 폐지의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을 주주의 이익이 법인으로부터 주주에게 흐르는 도관(conduit)으로 보아 법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주주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도관이론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폐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의 본질상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실체이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인은 사회의 일원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적 혜택에 대한 사용료의 의미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법인세는 조세감면을 통해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을 한다면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통합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

부만을 배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유보분에 대한 과세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기본방향으로서 완전통합방법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먼저 조합과세제도를 검토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조합과세제도는 법인의 구성원인 출자자를 공동사업의 조합원으로 보고, 각 출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법인유보이윤을 포함한 법인의 총소득을 귀속·할당시켜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세부담이 동일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나 유보된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 주주들의 지분비율대로 주주들에게 소득으로 배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주주가 많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sup>102)</sup>. 특히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주주가 수시로 바뀌는데 지분비율에 따라 이윤을 배분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주주에게 배당되지도 않은 내부유보를 위해 주주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때 만일 법인의 유보소득이 아주 많고 출자자의 배당금이 아주 적다면 출자자는 내부유보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지불하기 위해 소유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완전통합방법 중의 하나인 자본이득과세방식을 생각해 보자. 자본이득과세방식은 조합과세방식과 마찬가지로 법인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단계에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법인소득 중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 출자자 차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내부

102) 만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어서 주주가 많지 않다면 법인세의 폐지와 소득세로의 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예가 미국의 s-corporation에 대한 과세제도일 것이다.

유보에 대해서는 증가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방식도 이론적으로는 우수한 방법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되 조합과세방식과는 달리 배당을 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필요한데, 자본이득의 발생 단계에서 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자본이득의 발생 단계에서 출자자가 그 자본이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만일 주식의 매각 단계에서 과세를 한다면 그동안의 자본이득과 주식매각차익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주가는 그 법인의 자본이득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 등 다른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완전통합방법은 이론적인 면에서 우수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 때문에 장기적인 개편방향으로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해 주는 완벽한 방안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또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통합조정방안들 중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 가.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선

현행 배당세액공제제도는 저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에게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전부를 공제해 주지만,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출자자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의 15/33 정도만을 공제해 주고 있다.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

받는 출자자에게도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출자자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배당성향이 아주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낮다는 제VII장의 연구결과를 따르면 gross-up 비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법인기업을 개인기업에 비해 더욱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고소득 출자자의 경우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과소과세되고 있는데, 고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gross-up비율을 적용하면 저소득 출자자는 고소득 출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출자자단계에서의 이중과세의 해소는 당연한 것이다. 제VII장의 분석에서도 본 바와 같이 소득을 전부 배당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서 더 높다. 반면 법인이 소득의 전부를 배당하지 않고 일부를 배당하면 어느 한계점부터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소득 중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의 상대적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출자자단계에서의 이중과세는 이와 관계없이 완전히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익의 유보에 대한 과세를 시행함으로써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비슷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는 출자자에게도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gross-up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ext{gross-up 비율} = \text{실효세율} / (1 - \text{실효세율})$$

그러나 이 방법은 납세자인 출자자가 배당기업의 실효세율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과세당국에서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차선책으로는 저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 이외에도 고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도 배당기업이 고세율을 적용받는 지 저세율을 적용받는 지 과세당국에서 확인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실효세율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gross-up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만일 배당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고 할 때 고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gross-up 비율을 계산하면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gross-up 비율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다.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제 gross-up 비율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1억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동일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두 가지 gross-up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매우 복잡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은 현행의 gross-up 방식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부분통합 방법 중에서 지급배당공제방식, 임퓨테이션방식, 수입배당공제방식 등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배당이나 사내유보 중 어느 일방을 촉진하기보다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급배당공제방식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배당 상당액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급배당공제방식이 채택되어 장기간 시행될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는 대신 과도한 배당을 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배당을 과도하게 하면 기업의 내부유보를 크게 감소시켜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임퓨테이션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중과세 조정방법으로서 이중과세의 조정이 출자자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출자자의 배당소득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과중감을 제거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배당공제방식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수입배당금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정함으로써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임퓨테이션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퓨테이션방식은 계

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수입배당공제방식이 훨씬 나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향으로는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채택하기보다는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을 결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먼저 지급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의 절반 정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배당 상당액을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법인이 과도한 배당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해 배당금의 절반 정도는 출자자단계에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수입배당금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소득에서 바로 공제한다. 법인단계에서 배당의 절반만을 공제하고 배당의 절반은 출자자단계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급배당공제방법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을 결합함으로써 두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두 방식의 단점을 희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문제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 나.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

다. 지분비율에 따라 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60%, 90%, 100%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30%, 50%,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은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모회사와 자회사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방안 중에서는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V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해 이미 주어지고 있는 익금불산입 한도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용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지주회사 익금

불산입 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제Ⅶ장의 분석에 따르면 과소과세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출자자단계에서의 이중과세의 해소는 당연한 것이다. 제Ⅶ장의 분석에서도 본 바와 같이 소득을 전부 배당하면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서 더 높다. 반면 법인이 소득의 전부를 배당하지 않고 일부를 배당하면 어느 한계점부터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서 더 낮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소득 중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의 상대적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출자자단계에서의 이중과세는 이와 관계없이 완전히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과세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이익의 유보에 대한 과세를 시행함으로써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비슷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목적은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일단 4천만원까지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한다. 이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배당소득과세제도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제Ⅶ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진적이지 못하며 또한 소득종류별로도 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중단기

적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또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액이 낮아질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이 많아질 것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래 취지대로 고소득 금융소득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배당 이외에 이자 등을 포함하더라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각종 소득감면 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많다<sup>103)</sup>. 저소득 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는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분리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누진적이지 못하고 또한 소득종류별로 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모든 납세자가 배당소득 등의

103) 성명재·전영준(1998)은 1995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은 15.3%이고 근로소득의 실효세율은 4.9%로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소득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년부터 모두 14%이다.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이 2005년부터 8%임을 감안할 때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율의 최저세율 정도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Ⅶ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출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를 받지 때문이다.

다만 저소득 출자자가 이자나 배당수입 이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를 할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부담보다 적게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일 이자나 배당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소득자라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부담보다 훨씬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자나 배당 수입에 의존하는 노령층이 많아지고, 더구나 이자율이 낮아져서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식의 장기투자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서도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마.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의 확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배당과 내부유보에서의 조세 비중립적인 면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벗어나 안정성장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내부유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안정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가 배당에 비해서 내부유보를 지나치게 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시기와 관련하여 과세상 어려움이 있다. 자본이득을 그 발생 단계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주식의 평가가 매우 어렵고, 상장주식의 경우는 주가가 법인의 유보이익만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결국은 매각 단계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은 주가의 상승에 의해 주주가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보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 없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제도금융권의 배당,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배당 및 기타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주자가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상장 및 협회등록 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소득에 대하여 액면가가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액면가가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을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 IX. 요약 및 결론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소득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자에게 배당이 된 후 그 소득에 대해서 출자자단계에서 또 다시 과세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와 출자자단계에서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즉, 법인실제설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려는 입장인 것이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익금불산입 방식의 수입배당공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조정되지 못하거나 조정 후 조세가 중립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개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셋째, 소득세제의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데, 출자자가 출자자단계 또는 법인단계 및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액의 실효세율

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고서도 한동안 누진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출자자가 다수이고 모두 법인인 경우의 이중과세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첫째, 배당비율이 높지 않은 한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비해 낮다. 둘째, 지분비율이 낮은 출자자일수록 이중과세의 비율이 높다. 셋째, 실효세율의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두 단계의 세율이어서 네 단계의 소득세처럼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과 달리 배당금액만으로 고소득계층인지 저소득계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배당소득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인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의 조정이 미흡하다. 둘째,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아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 셋째,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넷째,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 다섯째,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배당과 유보이익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여섯째,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 배당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출자자가 분배

받은 배당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법인 전체의 입장에서 본 이중과세 문제이다. 기업의 출자자는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부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인의 출자자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후 배분된 배당에 대해서 출자자단계에서 또 다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당연히 배당소득공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적인 의미의 이중과세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을 비교해 볼 때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차이가 나고 사내유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제도하에서 법인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하기 때문에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기업의 조세부담이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보다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는 그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오히려 과소과세되고 있다는 문제는 사내유보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통합방법은 이론적인 면에서 우수하지만, 장기적인 개편방향으로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해 주는 완벽한 방안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현행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또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통합조정방안들 중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당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임퓨테이션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서 저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 이외에도 고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으로는 현행의 임퓨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 대신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을 결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지급배당공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금액만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과도한 배당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배당금의 절반 정도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수취배당금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소득에서 바로 공제한다. 법인단계에서 지급배당공제를 하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인다거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수입배당공제방식의 단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방안은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희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은 지주회사에 대해 일반법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법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모회사와 자회

시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저소득 출자자의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금액을 낮출수록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는 축소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출자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과세를 받는 경우에 비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소득자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의 세부담이 누진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출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를 받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이 8%임을 감안할 때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율의 최저세율 정도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은 주가의 상승에 의해 주주가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 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휘일, 「배당의 조세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건식·이창희, 「주식배당과 과세」, 『법학』, 서울대학교, 2001
- 김광윤, 「배당금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재검토」,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1.
- \_\_\_\_\_, 「주식보유관련세제에 관한 실증 연구」, 『세무학연구』, 제5호, 한국세무학회, 1993.
- 김동율·정우성, 「배당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경영논집』, 부산외국어대학 무역경영연구소, 1996.
- 김동현·유성룡, 「배당세와 기업의 배당정책」, 『동북아연구』, 홍익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1.
- 김용환, 「조세와 기업의 배당정책」, 『산업경영연구』, 카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
- 김유찬, 「최근 독일의 세제개혁」,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1월호.
- \_\_\_\_\_,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남명수, 「한국기업의 배당정책과 주가와의 관계」, 『연구논문집』, 제7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3.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성명재·전영준,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양규혁, 「배당소득세의 영향에 관한 세 견해의 비교」, 『논문집』, 제22집,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2.
- 원정연·김성민,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한 경영자 인식에 관한 연

- 구], 『증권·금융연구』, 제5권 1호, 1999.
- 이건희, 「경영재무전략을 위한 배당정책이론연구」, 『경영학연구』, 제23권, 제2호, 1994.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 이준규, 「이중과세와 사업형태의 선택」, 『세무학연구』, 제5호, 한국세무학회, 1993.
- \_\_\_\_\_, 『법인세법』, 세학사, 2002.
- 이준규·김진수,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이준규·이은상, 「이중과세와 조세의 중립성」, 『세무학연구』, 제7호, 한국세무학회, 1996.
- 이철송, 「법인간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해소방안」, 『상장협』, 제42호, 2000. 9.
- 장재식, 『법인소득과세론』, 경향문화출판사, 1976.
- 정재연, 「배당소득 과세제도가 배당이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전춘옥, 「배당소득세제의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7.
- 차동준, 「배당유형과 배당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_\_\_\_\_, 「배당소득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7.
- 채수열, 「의제배당과세론」, 『세무학연구』, 제14호, 한국세무학회, 1999.
- 최명근, 『법인세법』, 세경사, 1988.
- \_\_\_\_\_, 『한국조세의 제문제』, 조세통람사, 1991.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 1997.
- 한상범 외, 「한국·미국·일본의 배당제도 비교와 시사점」, 한국증

권연구원, 2002.

富永秀和, 『世界各國の證券稅制』, 稅務研究會 出版局, 1997.

財團法人 大藏財務協會, 『平成 16年版 圖解 源泉所得稅』, 2004.

Anroney, J. and I. Swary, "Quarterly Dividend and Earning Announcements and Stockholders' Returns :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e*, March, 1980.

Asquith, P. and D. Mullins, "The Impact of Initiating Dividend Payments on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Business*, January 1983.

Battacharya, S., "Imperfect Information, Dividend Policy and the 'Bird in the Hand' Fallacy," *Bell Journal of Economics* 95, Spring 1979.

Black, F. and M. Scholes, "The Effect of Dividend yield and Dividend Policy on Common Stock Prices an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May 1974.

Brennan, M., "Taxes market Valuation and Corporate Financial Policy,"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70.

Carter, K. 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 4, Ottawa : Queen's printer, 1967.

Charest, G., "Dividend Information, Stock returns and Market Efficien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6, 1978.

Crutchley, C.E. and R.S. Hansen, "A Test of the Agency Theory of Managerial Ownership, Corporate Leverage and Corporate Dividends," *Financial Management*, Winter 1989.

Elton, E. and M. Gruber, "Marginal Stockholders, Tax Rates and the Clientele Effec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 50, February 1970.

- Farrar, D. and L. Selwyn, "Taxes,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Return to Investors," *National Tax Journal*, December 1967.
- Gordon, M.J., "Dividends, Earnings and Stock Pric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1959.
- Kesti, J. and P. S. Anderson(eds.), *European Tax Handbook*, IBFD, 1998.
- Litzenberg, R.H. and K. Ramaswamy, "The Effect of Personal Taxes and Dividends on Capital Asset Prices: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7, 1979.
- McLure, Charles E. Jr., *Must Corporate Income be Taxed Twi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7.
- Meade, J. E., *The Structure of Reform of Direct Taxa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7.
- Miller, Merton H and Franco Modigliani, "Dividend Policy, Growth, And The Valuation of Shares, *The Journal of Business*, Vol. 34, 1961.
- Miller, M.H. and K. Rock, "Dividend Policy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Journal of Finance* 40, September 1985.
- Miller, M.H. and M. Scholes, "Dividend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December 1978.
- Miller, M.H. and M. Scholes, "Dividend and taxes :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December 1982.
- Musgrave R. A. and P. 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Book Co., 1989.

- Ross, S.A., "The Determination of Financial Structure: the Incentive Approach," *Bell Journal of Economics* 8, Spring 1977.
- Spence, A.M., "Job Market Signall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August 1973.
- Walter, J.E., "Dividend Policies on Common Stock Prices," *The Journal of Finance*, March 1956.

<국문요약>

##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익금불산입 방식의 수입배당공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가 완벽하게 조정되지 못하거나 조정 후 조세가 중립적이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배당소득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인단계에서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액을 출자자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의 조정이 미흡하다. 둘째, 고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높지 않아 누진세율구조를 통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는 현행 소득세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 셋째,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는 법인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와 지주회사인 경우를 구분하여 이중과세를 차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다. 넷째, 동일한 사업을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법인형태로 운영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 다섯째, 법인이 배당과 이익의 유보 사이의 결정에 있어서 이익의 유보를 선호하도록 하는 배당과 유보이이익 간 조세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여섯째, 자기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도록 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 배당의 비중립성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당소득세제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임퓨테이션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차선택으로서 저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 이외에도 고세율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gross-up 비율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으로는 현행의 임퓨테이션방식의 배당세액공제제도 대신 지급배당공제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을 결합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저소득 출자자의 세부담률이 누진적이 아니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들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배당이나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율의 최저세율 정도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법인의 이윤은 주가의 상승에 의해 주주가 우회적으로 배당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소액주주, 보유기간의 구별 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Reform Proposal for the Dividend Taxation

Jin Soo Kim

In Korea, the imputation method is used as the relief measure of double taxation for individual shareholders, and the dividend exclusion method is used as the relief measure of double taxation for corporate shareholders. However, if the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s not fully relieved or the tax system does not maintain neutrality after the relief, it would have an influence on firm's behavior such as the choice of business form, the preference of debt to capital, and the distortion of dividend policy.

This study shows that dividend taxation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relief of double taxation is not sufficient, because the corporate income tax that was levied at the corporate phase is not fully relieved at the shareholder phase. Second, since the tax burden of high income bracket is not so high as compared with that of low income bracket, this is utterly opposed to the purpose of individual income tax, fair tax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through the progressive rate of tax. Third, there is the discriminative tax treatment of common corporation and holding company in enforcement of the dividend exclusion method. Fourth, taxation is not neutral in choosing the form of business, private business or corporation. Fifth, the dividend taxation does not adhere to neutrality between dividend and reservation of profits, which makes

firms prefer reservation of profits to dividend. Sixth, the dividend taxation does not adhere to neutrality between capital and debt, which makes firms prefer debt to capital.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to rectify the current problems. First, if the imputation method is still applied, the gross-up ratio that is calculated by effective tax rate should be used, and as a second best the gross-up ratio that is calculated by higher rate of corporate tax rate could be used. For the long term reform, the mixture of the dividend deduction method and the dividend exclusion method could be used in substitute for the imputation method. Second, the same proportion of exclusion of gains must be applied to holding company and common corporation. Third, the problem that the tax burden of low income bracket is not progressive could be solved by lowering the basis amount of global income taxation. Also it must be permitted to choose separate taxation or general taxation even if the financial amount is less than the basis amount of global income taxation. In the long term, global income taxation must be abolished and then every taxpayer must be liable for general taxation by adding up all incomes. Fourth, the rates of withholding income tax on dividend or interest must be lowered down to the lowest rate of income tax. Fifth, since the reservation of profits seems to be dividend indirectly, the income tax on transfer of shares should be imposed whether the firm is listed or not, or whether the shareholder is major or not, and whether the period of possession is long or not.

<著者略歷>

金 珍 洙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政策報告書 04-0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2004년 12월 24일 인쇄  
2004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김진수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팩시밀리 : 2186-2179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4

ISBN 89-8191-290-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